

/러/시/아/

RUSSIA

I. 수출입동향

II. 관세제도

III. 수입검사제도

IV. 식품위생제도

V. 수입규제제도

VI. 기타사항

● ● ● 목 차 ● ● ●

I. 수출입동향	93
1. 수출입개요	93
2. 양국간교역현황	101
3. 한국산수출현황분석	103
II. 관세제도	105
1. HS 코드별종합관세율	105
2. 수입통관절차	105
3. 통관구비서류	109
4. 통관시주의사항	109
5. 주요세관현황	109
6. 원산지규정	113
7. 관세평가제도	116
8. 수입관세의구분및 종류	121
9. 관세특혜	122
10. 기타관세관련제도	123
11. 관세법위반시제재조치	126
III. 수입검사제도	127
1. 수입허가사항	127
2. 식품수입검역, 검사제도및 관련기관	127
3. 한국산농산물에대한검역규정및 검역현황	132
4. 품목별상세검역제도	132

● ● ● Contents ● ● ●

IV. 식품위생제도.....	139.....
1. 식품표시제도.....	139.....
2. 수입식품의성분, 식품첨가물.....	140.....
3. 식품검사제도, 검사방법, 검사기준, 식품검역및 수검절차.....	142.....
4. 잔류농약허용기준.....	144.....
5. 유전자변형식품현황.....	160.....
V. 수입규제제도.....	163.....
1. 수입관세쿼티제도.....	163.....
2. 수입면허제도.....	166.....
3. 세이프가드제도.....	167.....
4. 수입금지품목및 국가	169.....
5. 품질인증제도	170.....
6. 기타비관세규제.....	177.....
7. 한국식품수입규제및 위반사례	178.....
VI. 기타사항.....	179.....
1. 농수산물(식품)관련요정부기관내역.....	179.....
2. 대러수출시유의사항.....	182.....
3. 조사참고자료및 협조기관	183.....

I. 수출입 동향

1. 수출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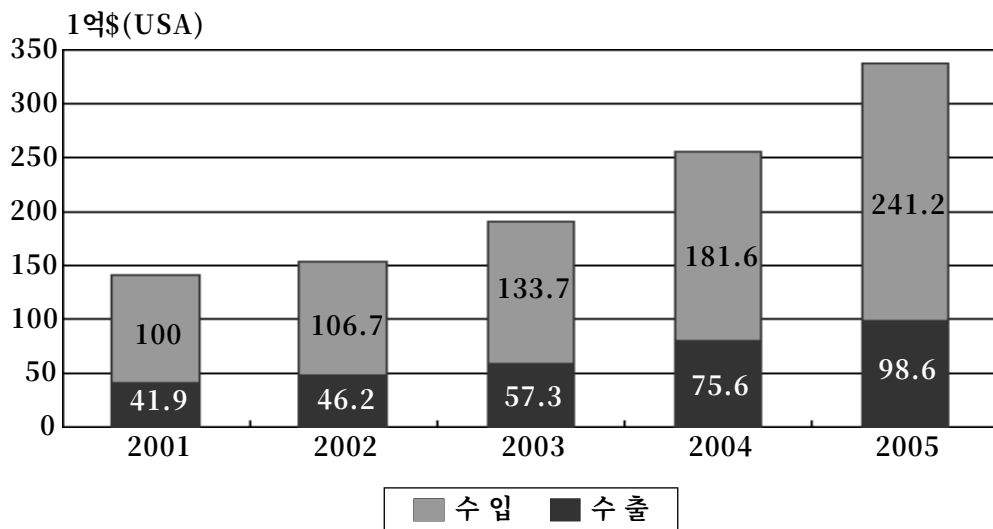
- 러시아내에서 수입식료품의 위치는 전체 국내 수요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체 러시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HS Code 01~24번까지로 분류되는 식료 및 직접소비재의 러시아 전체 수출 및 수입량은 2003년~2005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대외 교역 추세
 - 2003년 전체 대외 무역 총액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대외 무역 총액은 1907억불로 2002년과 비교해 24.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761억불로 전년대비 156억불 증가했다.
이 중 식품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2002년(8.4%)과 비교해 감소하였다. 수출입 비중을 따로 살펴보면 수입량이 전체 21.6%, 수출량이 2.1%를 차지했는데 전년대비 수입비중은 증가했지만 수출비중은 감소했다.
CIS 지역을 제외한대외무역에서 식품류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주요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생선(25.7%), 연유(80.4%), 커피(24.0%), 버터(26.2%), 보리(30.9%) 등이었고, 반면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은 해바라기유(36.3%)의 수입감소폭이 가장 컸다.
 - 세계시장의 기본원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2004년 대외무역량도 증가했다. 전체 대외무역 총액은 2572억불로 전년대비 34.7% 증가했고 무역수지 또한 298억불 증가해 1060억불을 기록했다.

이 중 식품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이 이유는 식품류의 실제 수출입량은 늘었지만 에너지원료의 무역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CIS 지역을 제외한대외무역에서 식품류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2004년 수입 증가. 감소 품목은 2003년과 어느 부분 대비되는 양상을 띄었다.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생선(20.7%), 보리(28.5%)등 이었고,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조류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버터의 수입량은 감소했고(44.2%) 고기 통조림의 수입량은 증가(26.4%)했다.

- 2005년은 세계 상품 시장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러시아내 거래가 활발해지고 국내 수요의 확산으로 대외 무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대외무역총액은 3398억불로 전년대비 32.1%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1426억불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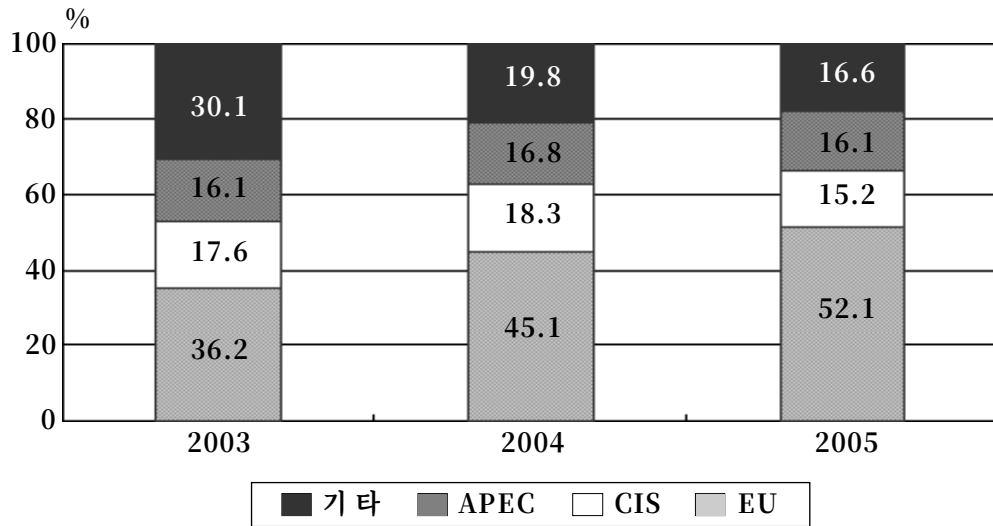
이 중 식품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년과 비슷한 이유로 무역량은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다.

<표 1> 러시아 전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



*) 백러시아와의 교역량 포함

<표 2> 국가 그룹별 교역량 비율



*) EU에 포함된 국가수

2003년 15개국, 2004년 1월~4월 15개국, 5월~12월 25개국, 2005년 25개국

**) 백러시아와의 교역량 포함

<표 3> 러시아 전체 대외교역 규모와 식품류 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2003	2004	2005
러시아 연간 대외교역 총액	128,520.5	239,465.6	323,988.6
수 입	52,466.7	69,084.4	92,862.8
수 출	126,053.8	170,381.2	23,1125.8
대 CIS 교역 총액	21,128.6	29,480.2	35,721.9
수 입	8,259.2	11,228.3	13,221.4
수 출	18,243.7	18,251.9	22,500.5
식품류 및 농업원료 수출입 총액 (H.S. Codes 01~24)	14,002.5	15,299	20,184.7
수입(점유율%)	11,312.4(21.6%)	12,820.3(18%)	16,281.5
수입(점유율%)	2,690.1	2,478.7	3,903.2
대 CIS 교역 총액	2,803	3,528.3	4,334.8
수 입	1,859.4	2,462.9	2,739.9
수 출	943.6	1,065.4	2,462.9

자료원 : 러시아 관세 위원회

*) 백러시아와의 교역분 제외

<표 4> 연도별, H.S. Code 2단위별 수출입 추이(H.S. Code 01 ~ 24)
(단위 : 백만달러)

H.S.Code	2003		2004		2005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Total						
01(산동물)	8.2	32.4	32.4	47.9	3.4	76.7
02(육류)	1.8	2,211.7	2,211.7	2,247.9	4.6	3,020.7
03(어패류)	408.3	411.4	411.4	642.9	456.6	954.8
04(낙농품, 조란, 꿀)	74.7	624.8	624.8	757.6	131.7	986.6
05(기타 동물성)	9.7	25.8	25.8	29	16.2	39.3
06(산수목, 꽃)	0.8	112.2	112.2	185.5	0.8	246.4
07(채소)	37.5	421.9	421.9	466	54.4	722.9
08(과실, 견과류)	65.2	1,134.4	1134.4	1566.7	66	2,132.4
09(커피, 차, 향신료)	12.3	307.3	307.3	360.8	41.5	408.9
10(곡물)	1,111.7	211.5	211.5	460.6	1350.6	245.4
11(곡물의 분)	60.3	199.2	199.2	212.1	55.3	142.7
12(채유용 종자, 인삼)	84.1	121.8	121.8	168.7	87.7	194.9
13(식물성 엑스)	0.8	45.8	45.8	42.3	0.8	44.0
14(기타 식물성)	0.1	2.2	2.2	4	0.3	3.4
15(동식물성 유지)	71	593.3	593.3	545.5	241.1	703.5
16(육, 어류 조제품)	47	131.4	131.4	142.6	110.2	188.2
17(당류, 설탕과자)	62	1,039.7	1,039.7	727	80.3	932.7
18(코코아, 초코렛)	100.3	452	452	500.9	184.5	568.7
19(곡분 조제품, 빵)	87.9	169	169	214.1	170	260.9
20(채소,과실조제품)	24.5	510.2	510.2	598.2	81.9	777.5
21(음료, 주류, 식초)	114.1	591.4	591.4	639.3	229.9	760.2
22(음료, 주류, 식초)	141.7	900.5	900.5	1,131.9	210.9	1,508.4
23(조제 사료)	56.2	316.1	316.1	371.6	102.1	471.8
24(담배)	110.2	746.4	746.4	757.2	222.3	890.4

자료원 : 러시아 관세 위원회

*) 백러시아와의 교역분 제외

<표 5>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러시아 주요 식료품 수입현황
(단위 : 물량(T), 금액(천\$))

구 분	2003		2004		200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H.S.Code 020230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뼈없는 것						
총 계	389,188	468,874.30	429,911	547,595.40	624,900	802,163.20
브 라 질	60,652	99,127.60	146,578	170,601.80	299,001	375,275.10
아르헨티나	22,020	24,485.20	83,981	103,370.00	189,943	235,010.00
아 일 랜 드	58,435	67,110.80	36,799	44,370.20	20,508	24,540.70
스 페 인	42,647	50,174.10	32,323	38,402.70	10,885	13,254.20
독 일	46,055	50,437.10	29,861	35,201.60	17,459	23,860.20
우크라이나	51,849	88,546.20	23,442	58,764.50	11,599	33,423.90
H.S.Code 020321 : 냉동 돼지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총 계	229,574	238,434.50	140,664	159,954.90	170,402	200,221.50
브 라 질	135,969	143,293.20	88,870	99,083.50	145,144	167,538.90
폴 란 드	73,485	70,607.80	26,545	28,777.80	11,107	13,017.20
독 일	1,923	2,822.00	8,708	11,928.60	3,966	5,968.70
핀 란 드	2,015	2,428.90	1,956	2,286.90	2,244	2,866.50
스 페 인	269	291.60	2,962	4,121.40	1,803	2,654.70
H.S.Code 020329 : 냉동 돼지고기-기타						
총 계	267,243	370,193.50	265,922	401,347.50	343,660	549,260.50
브 라 질	160,500	248,406.90	157,158	257,016.70	242,479	406,367.20
중 국	39,710	48,411.80	24,469	36,679.20	1,760	2,424.10
덴 마 크	16,171	16,928.10	21,921	23,636.90	29,026	34,799.60
독 일	13,796	16,797.10	13,852	19,827.40	13,466	21,648.70
프 랑 스	6,850	8,082.80	11,451	15,181.30	5,588	7,714.60
H.S.Code 020714 : 가금류의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것)						
총 계	982,911	554,708.40	915,576	525,895.80	1,111,558	692,624.30
미 국	723,085	397,521.00	701,625	386,458.30	818,378	482,614.50
브 라 질	122,005	73,883.40	104,708	71,457.30	156,547	124,102.20
독 일	36,702	22,009.40	48,423	31,733.00	69,906	44,811.30
폴 란 드	14,784	8,253.70	9,738	5,196.30	4,327	2,310.00
영 국	16,810	9,039.40	9,961	5,359.20	13,414	7,754.70

구 분	2003		2004		200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H.S.Code 040510 : 버터						
총 계	13,996	157,775.10	70,351	116,388.30	66,014	123,522.20
뉴 질 랜 드	33,391	45,911.30	22,847	32,733.50	23,867	35,090.60
핀 란 드	19,645	36,878.00	16,552	38,490.10	15,910	43,218.40
독 일	16,779	19,983.90	6,194	7,838.70	4,815	7,115.20
우크라이나	5,292	7,795.90	8,874	14,119.20	9,100	17,057.00
네 덜 란 드	6,569	7,717.50	2,728	3,377.30	795	1,125.10
H.S.Code 040690 : 기타 치즈						
총계	152,196	291,680.70	183,803	391,349.10	224,170	569,761.70
우크라이나	57,138	118,634.70	88,029	208,137.40	109,747	305,359.50
독 일	51,658	88,905.00	46,187	82,697.50	50,240	113,183.40
리투아니아	10,802	14,945.90	14,565	23,334.00	20,118	39,373.30
네 덜 란 드	9,011	15,543.20	9,658	17,287.40	11,492	25,955.20
핀 란 드	6,345	21,780.70	4,416	16,804.30	5,410	21,012.70
H.S.Code 080510 : 오렌지						
총계	404,062	138,595.00	398,678	154,541.00	391,133	195,116.70
남 아 공	103,572	40,627.60	75,895	36,460.20	54,681	28,479.60
모 로 코	91,850	34,974.20	76,642	30,708.60	88,406	45,980.60
이 집 트	76,049	21,323.40	110,015	34,544.80	88,685	41,787.40
터 키	88,891	24,706.30	72,742	22,349.10	82,159	38,025.30
아르헨티나	7,211	2,797.30	38,461	18,289.40	46,729	24,320.50
H.S.Code 080810 : 사과						
총계	608,237	197,841.80	705,299	237,318.90	723,579	294,878.20
폴 란 드	137,059	102,539.00	209,430	65,928.50	195,313	79,138.00
중 국	94,858	26,520.10	107,438	34,900.80	125,662	52,709.20
몰 도 바	102,539	34,423.30	121,781	37,941.90	26,399	8,167.10
아르헨티나	53,941	18,891.70	46,321	16,815.50	69,066	31,153.30
아제르바이잔	42,471	11,632.40	45,770	14,170.90	63,083	19,892.90
H.S.Code 090240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총계	117,542	132,320.50	125,598	154,939.20	128,684	166,150.70
인 도	38,802	42,045.60	39,590	47,556.70	33,554	42,344.80
스 리 랑 카	38,456	44,231.80	41,660	53,900.00	39,986	57,203.60
인도네시아	13,510	16,178.40	16,587	19,985.00	19,909	24,416.40
중 국	9,795	8,371.10	7,007	5,954.10	8,220	7,053.30
케냐	7,358	11,542.80	8,944	15,185.60	12,343	19,620.80

구 분	2003		2004		200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H.S.Code 151219 : 기타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총 계	156,461	118,542.10	153,921	120,887.70	127,293	112,511.60
우크라이나	102,175	81,942.70	92,200	73,724.20	104,881	94,108.30
아르헨티나	38,355	27,195.10	24,326	20,062.10	2,899	2,788.40
형 가 리	7,569	4,356.90	9,698	6,807.70	3,558	2,242.50
물 도 바	7,389	4,265.00	15,213	10,396.90	7,120	5,078.50
루 마 니 아	382	313.50	12,002	9,507.60	8,205	7,740.20
H.S.Code 170111 : 사탕수수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총 계	4,111,961	854,138.60	2,582,927	540,037.10	2,892,995	744,349.40
브 라 질	2,353,798	471,056.80	1,569,548	334,103.50	2,365,759	609,492.90
쿠 바	736,539	161,298.90	849,253	172,773.90	185,167	47,468.70
태 국	557,068	119,938.00	64,162	14,256.80	44,720	11,559.00
콜 롬 비 아	2,045	478.80	30,718	5,567.10	57,804	14,233.20
엘 살바도르	120,517	25,783.30	64,876	12,210.30	64,798	16,675.20
H.S.Code 180690 :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초코렛 및 조제식품류						
총 계	107,776	136,302.80	106,938	165,343.80	101,470	189,994.00
우크라이나	94,957	94,304.10	91,301	109,827.10	85,448	129,856.00
폴 란 드	2,224	11,186.50	2,439	12,847.40	3,266	16,088.30
독 일	1,487	4,623.40	1,854	7,646.80	2,230	10,474.90
네 덜 란 드	1,609	3,376.20	1,511	3,245.50	1,955	4,487.20
이 탈 리 아	1,675	6,254.30	1,340	5,501.30	1,333	6,545.80
H.S.Code 210111 : 커피와엑스·에센스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총 계	69,877	211,887.80	56,938	209,894.90	56,780	253,675.40
인 도	16,254	44,133.00	15,010	39,037.10	14,241	42,564.40
독 일	20,047	51,544.40	11,309	48,298.10	11,472	67,333.10
브 라 질	8,653	18,449.10	10,800	38,116.70	11,487	46,900.80
영 국	3,412	11,417.20	4,473	14,103.60	3,925	16,878.80
네 덜 란 드	2,977	2,066.10	3,443	3,406.70	2,841	10,038.20
H.S.Code 2106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기타						
총 계	285,804	209,020.80	105,137	233,925.50	97,085	266,816.10
한 국	19,297	5,158.30	24,934	6,695.90	28,432	9,701.00
독 일	14,700	25,943.80	15,949	27,593.50	11,856	33,907.20
폴 란 드	10,551	8,655.10	13,138	14,225.00	9,126	11,510.70
네 덜 란 드	6,728	11,182.10	7,794	12,522.20	7,599	14,529.60
영 국	5,071	6,705.90	6,095	9,484.00	1,192	4,451.20

구 분	2003		2004		200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H.S.Code 220820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총 계	1,932,338	191,071.10	1,956,698	220,713.40	2,124,830	257,447.50
프 랑 스	524,058	89,749.50	643,651	11,075.30	600,428	121,439.20
몰 도 바	406,592	30,388.90	433,280	33,998.70	402,232	33,428.10
아제르바이잔	465,721	5,380.50	300,384	4,639.60	376,539	6,901.80
아르메니아	299,770	51,407.30	313,630	49,619.40	367,336	66,416.90
그 루 지 야	185,406	9,562.90	165,413	14,004.30	297,818	20,782.30
H.S.Code 230990 : 사료용 조제품-기타						
총 계	153,609	111,651.30	168,116	141,022.10	209,233	166,746.00
네 덜 란 드	56,242	34,105.20	69,549	48,879.70	87,269	61,510.40
리투아니아	20,283	7,189.00	15,758	7,814.20	16,506	7,862.30
벨 기 에	9,389	7,779.00	18,431	16,204.10	16,858	13,289.80
핀 란 드	16,884	9,959.20	13,333	11,140.90	21,353	16,334.30
독 일	10,444	10,126.30	12,475	14,076.10	15,412	15,449.50
H.S.Code 240110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총 계	77,521	131,506.30	70,603	133,476.70	68,813	141,785.80
터 키	11,739	41,774.60	14,370	47,223.00	12,416	43,049.30
키르기즈스탄	12,376	11,201.10	6,335	7,746.70	6,937	8,659.40
우즈베키스탄	7,555	5,892.20	5,048	5,373.70	5,390	6,343.50
그 리 스	6,851	20,431.30	6,284	20,014.40	6,658	24,264.70
인도네시아	5,274	6,330.00	5,382	5,917.50	6,085	6,474.30
H.S.Code 240120 :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총 계	153,401	494,053.40	141,092	428,881.70	153,401	494,053.40
브 라 질	36,663	131,072.40	25,532	89,057.90	38,581	139,019.00
인 도	24,059	38,109.80	27,905	47,556.00	32,446	58,207.20
미 국	9,388	58,631.20	18,439	105,056.40	13,896	87,358.30
중 국	13,902	21,767.60	11,186	21,818.20	5,149	12,701.40
이 탈 리 아	9,509	43,819.40	10,274	51,321.50	10,705	37,087.50

2. 양국간 교역현황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와 한국의 전체 교역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는 한국으로의 수출량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다. 특히, 2005년에는 전년대비 전체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산 수입량이 약 2배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 2003년~2005년 식품류 및 농업원료 전체 교역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출입을 따로 놓고 봤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2004년 러시아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고, 2005년에는 한국산 수입량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 러시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수출량의 80~90%를 차지하는 어류이고, 이외에 조제식품, 곡물 순이다. 한국의 대러 수출 품목으로는 기타 식품이 90%이상을 차지했다.
- 전체 교역량중 식품류의 교역량 비율이 최근 3년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교역량은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류의 교역량은 정체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6> 러시아 전체 대한 교역규모와 식품류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연 도	2003	2004	2005
연간 교역량 총액	2,649,528	3,989,565	6,363,811
수 출	1,321,902	1,963,345	2,361,027
수 입	1,327,626	2,026,251	4,002,784
무역수지	-5,724	-62,906	-1,641,757
식품류 및 농업원료 수출입 총액(H.S. Codes 01~24)	163,711	116,233	166,194
전체 교역량중 식품류 점유율(%)	6.17%	2.91%	2.61%
수 출	124,513	76,141	89,403
수 입	39,198	40,092	76,791

<표 7> 대한 러시아 연도별, H.S. Code 2단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H.S.Code	2003		2004		2005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Total	124,513	39,198	76,141	40,092	89,403	76,791
01(산동물)	N/A	N/A	N/A	N/A	N/A	N/A
02(육류)	N/A	N/A	1	N/A	27	8840
03(어패류)	120,969	650	73,041	423	87,266	1,395
04(낙농품, 조란, 꿀)	N/A	N/A	N/A	N/A	N/A	N/A
05(기타 동물성)	975	N/A	655	25	720	N/A
06(산수목, 꽃)	N/A	N/A	N/A	N/A	N/A	N/A
07(채소)	348	1	313	60	N/A	N/A
08(과실, 견과류)	N/A	1,135	0	209	N/A	122
09(커피, 차, 향신료)	N/A	N/A	N/A	N/A	N/A	N/A
10(곡물)	N/A	N/A	N/A	N/A	N/A	N/A
11(곡물의 분)	N/A	N/A	N/A	N/A	N/A	N/A
12(채유용 종자, 인삼)	340	27	172	39	336	43
13(식물성 엑스)	0	N/A	N/A	N/A	94	114
14(기타 식물성)	N/A	N/A	N/A	N/A	N/A	N/A
15(동식물성 유지)	0	1,811	28	1,345	47	2,074
16(육, 어류 조제품)	868	185	721	170	659	133
17(당류, 설탕과자)	N/A	96	0	194	N/A	N/A
18(코코아, 초코렛)	N/A	N/A	N/A	N/A	N/A	N/A
19(곡분 조제품, 빵)	0	8,695	N/A	9,559	N/A	5,742
20(채소,과실조제품)	179	87	18	167	2	150
21(음료, 주류, 식초)	144	22,030	1,053	23,863	100	28,928
22(음료, 주류, 식초)	3	3,111	108	4,303	17	5,603
23(조제 사료)	685	2	133		130	N/A
24(담배)	2	1,368	6	4,890	5	23,647

자료원 : 러시아 관세 위원회

3. 한국산 수출현황 분석

□ 한국의 대러 식료품 수출현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류와 간장 및 기타 장류 등으로 주로
조제식료품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러시아의 주요 수입 식료품목중 한국산은 H.S.Code 210111(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과 210690(기타 두부류)가 수출되고 있다.

<표 8> 한국산 수출 현황

구분 (H.S.Code)	2003			2004			2005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020322	127	145.7	0.42%	-	-	-	-	-	-
020329	1,405	1,717.1	0.46%	-	-	-	6,054	8,604	1.56%
020900	-	-	-	-	-	-	275	236.5	0.17%
030378	-	-	-	-	-	-	1,027	789.8	2.08%
030379	-	-	-	470	283.2	0.83%	241	135.8	0.20%
030420	-	-	-	-	-	-	191	276.9	0.42%
030749	-	-	-	48	67.8	0.47%	132	132	0.05%
070490	-	-	-	410	59.8	0.30%	-	-	-
080520	2,611	1,107.5	1.64%	351	193.7	0.18%	230	121.6	0.06%
110812	-	-	-	242	73.3	2.89%	-	-	-
150710	4,072	1,345.2	21.40%	2,715	900.8	45.80%	372	199.4	4.53%
150790	913	304.6	0.37%	1,150	393.2	1.08%	3,406	1,589.4	3.45%
151710	256	156.9	1.39%	-	-	-	147	122	0.76%
151790	-	-	-	-	-	-	197	157.9	0.32%
160590	116	176.5	3.00%	42	135	1.32%	40	128.6	0.54%

구분 (H.S.Code)	2003			2004			2005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물량(T)	금액 (천\$)	해당항목 금액구성 비(%)
1701991000	208	67.8	0.13%	348	136.8	0.19%	-	-	-
190190	-	-	-	164	50.2	0.24%	-	-	-
190230	23,920	6212.9	48.59%	26,505	7,127.8	44.33%	12,645	3513.3	22.63%
190410				249	109.5	1.81%	136	58.1	0.80%
190531	1,833	533.7	11.82%	1,767	622.3	1.51%	1,934	569.5	1.24%
190590	4,777	1904.1	1.60%	4,138	1,630.3	5.71%	3,875	1534.3	3.41%
200799	-	-	-	84	57	0.08%	-	-	-
210111	1,151	4,169.5	1.96%	1,215	4809.9	2.29%	1,393	6410.9	2.52%
210112	120	145.3	0.49%	122	129.7	0.32%	181	197.2	38.00%
210310	2,509	361.5	19.14%	2,573	390.3	15.11%	5,144	1067.1	28.01%
210390	18,163	11,255	19.31%	19,791	11,675.4	19.25%	21,878	11035.5	18.34%
210410	3,218	938	6.64%	254	97.9	0.90%	1,292	445.2	7.37%
210610	157	81.2	0.32%	-	-	-	-	-	-
210690	19,297	5,158.3	2.46%	24,934	6695.9	2.86%	28,432	9701	3.63%
220190	-	-	-	-	-	-	723,592	163.6	47.40%
220210	2,556,881	562.1	4.85%	38,224	834.9	4.40%	625,839	1464.9	4.61%
220290	4,406,993	2,482.4	17.72%	672,026	3,297.1	20.13%	824,277	3772.6	16.36%
220300	109,388	55.3	0.09%	27,810	163	0.24%	26,320	201.9	0.23%
240130	535	395.6	0.88%	-	-	-	-	-	-
240220	-	972	1.44%	610	4,890.4	9.83%	2,063	23647.3	33.70%

자료원 : 러시아 관세 위원회

II. 관세제도

1. H.S.Code별 종합 관세율

□ 관세율 조회

- 러시아 사이트 : www.tks.ru
초기화면에서 “ Базы данных (Data Base) ” 밑의 “ ТН ВЭД России (H.S.Code)”클릭
- 새로 전환된 창에서 “ поиск в ТН ВЭД ”를 클릭하면 검색창이 뜬다.
이 상태에서 관세율을 알기 원하는 H.S.Code단위를 입력한다.
- 이동 후 H.S.Code의 하위 H.S.Code가 화면에 뜨게 되며, 각줄의 오른쪽 끝에 빨간 물음표가 달린 파란색 기호가 보인다.
- 이 파란색 기호를 누르면 관세율 정보가 포함된 새 창이 뜨게된다. 새 창 의 표 중 첫 줄(импортная пошлина)이 수입관세율이다.(НДС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함)

2. 수입 통관 절차

- 러시아의 통관 절차는 매우 관료적으로 실제 그 수속을 정식으로 밟을 경우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만약 수입상이 세관원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심지어 별도의 뇌물 공여 없이도 통관이 쉽게 행해지기도 한다.
- 실제로 러시아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도 각종 부정이 행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통관 관련 법규 관련, 각종령이 수 없이 남발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상위법 또는 다른 명령과 모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명령이 너무 많아 세관원들이 모든 명령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또한 국토가 너무 넓고 세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법령 실시도 실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는 매 통관시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 러시아 통관절차에 관한 기본 행정 명령은 1996년 4월 4일 발표된 바 있는 관세위원회 명령 203호라 할 수 있다. 동 명령에 기재된 수입상들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수입상들은 세관에 “대외경제활동 참가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상은 화물 도착에 관한 사실을 세관에 통보한다.
- 수입상은 수입제품을 세관 창고에 위치시켜야 한다.
- 수입상은 세관에 간이 통관신고서와 운송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수입상은 정식 화물 통관 신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최근 러시아 통관절차의 변화 : 러시아 정부는 불법적인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2000년부터 소위 내물 등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모스크바로 반입되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검열을 엄격히 하라는 관세위원회의 긴급 명령이 내리고 1만 5천 달러 이상 미만으로 신고된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낱알이 검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하루면 충분하던 통관검사는 일주일 이상 걸렸다. 이로 인해 2000년 1월 러시아의 소비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5%나 줄었지만 꼼꼼한 세관검사로 관세 수입은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엄격한 세관의 자세로 관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이른바 ‘회색상품’이 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35~40%에서 15%로 줄어 들었다.

□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러시아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 시스템 하에서는 상품이 최종통관 하기까지 검사원 6명의 6단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1단계 : 제출된 서면 관세 신고서와 국경 검사대에서 송부해 오는 전자우편 내용 비교검사
 - ▷ 통관 신고서 수령 조건 체크
 - ▷ 통관 신고서 및 기타관련 서류 및 전자 통관서류 접수
 - ▷ 통관 신고서 등록
 - ▷ 통관 신고서 내용 체크
- 2단계 : 화물 검사 및 검사서 작성(신고한 제품의H.S.Code와 실제 물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비관세 규정 절차 준수 여부를 체크한다.)
 - ▷ 통관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러시아가 현재 준수하고 있는 CIS H.S.Code와의 일치 여부 체크
 - ▷ 통관신고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입제품을 기재했는지 체크
 -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관련사항 체크. 만약 특혜관세 해당 물품이면 동 사항 체크
 - ▷ 비관세 규정 준수 여부 체크
 - ▷ 관세 규정 준수 여부등 체크
- 3단계 : 모든 서면 신고서, 전자우편(국경검사대 송부), 화물 검사서 비교 검사(이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수입업자가 화물반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사), 외환 관리 및 신고금액 검사
 - ▷ 외환관리 제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유효성 검사
 - ▷ 수입계약서가 러시아 외환관리제도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
 - ▷ 통관신청자가 기재한 서류가 관세를 정확한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여부 검사
 - ▷ 신고된 액수가 관련 서류(계약서, 운송서류, 지불조건, 인보이스 등)와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 등을 하게 됨
- 4단계 : 통관비 결정
 - ▷ 신고인이 화물 통관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검사
 - ▷ 통관신고서 재검토,특히 관세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 특혜관세 대상 제품의 경우 서류 정밀 재검토

▷ 관세가 정확한 방법으로 산정 되었는지 여부 다시 검사

▷ 신고인이 관세 납부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체크

- 5단계 : Deposit 금약 환불(수입업자는 러시아내 상품을 반입한 후 4일 이내 통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Deposit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치는 데에는 약 2~7일이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Deposit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 6단계 :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모든관련서류 사본은 승인을 얻기 위해 러시아 관세위원회에 송부되며, 관세위원회에서의 승인이 떨어진 후 세관 검사원은 상품의 최종통관 결정을 내린다.

□ 2001년 8월 8일, 러시아 관세 위원회장은 상품의 통관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상품의 통관수속 단계>에 관한 훈령 제 748호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통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3, 4, 5번 단계가 한 단계로 통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6단계에 있는 세관검사원이 3, 4, 5, 6단계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 훈령의 시행대상 업체는 그 동안 통관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회사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명단에는 이전의 외국계 회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규모 수입상 명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훈령은 각 지역 세관국의 명령을 거쳐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심한 곳이 바로 러시아이니만큼 당장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통관 구비 서류

- ☐ 일반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수입계약서
 - ▷ 세관신고서(소정양식)
 - ▷ Commercial Invoice
 - ▷ Packign list
 - ▷ 운송서류
 - ▷ 외환규제제도에 따른 서류 및 물품가액 증면서류

- ☐ 일부 수입물품에 따라서는 아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 러시아 경제 개발 통상부에서 발행하는(수입)면허 원본
 - ▷ 관련기관(농업부)등에서 발행한 수입허가 서류 원본
 - ▷ 각종 인증서류(원산지 증명서, 원생 인증, 안전 인증, 가축병 증명서, 식물 위생 증명서등)

4. 통관시 주의사항

인보이스상 명기된 물품내역은 거래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할 것
통관시 H.S.Code를 정확히 명기할 것
관세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가액 평가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충분히 확보 후 제시할 것(수출 신고 사본, 가격표 등)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보세창고 및 담당 세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것

5. 주요 세관 현황

- ☐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통관 관련 사항은 “러시아 관세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관세위원회는 산하에 7개의 지방 세관 부서가 있으며 이외에 6개

의 세관이 직속으로 속하여 있다.

□ 지방 세관부서

- 중앙 세관부서(27개 세관)
- 북서 세관부서(24개 세관)
- 남부 세관부서(20개 세관)
- 시베리아 세관부서(19개 세관)
- 볼가지방 세관부서(17개 세관)
- 극동 세관부서(17개 세관)
- 우랄지방 세관부서(10개 세관)

□ 이외에 관세위원회 직속세관이 모스크바 근교 공항에 위치해 있다.

(Domodedovo, Chkalovskoye, Ramenskoye, Sheremetyevo and Vnukovo)

□ 각각의 개별 세관은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Shyolkovo세관은 18개, central Excise Custom House는 29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Moscow-East-2개, Moscow-West-18개, Moscow-North-21개, Moscow-South-2개, Zelenograd-24개, Noginsk-21개, Podolsk-19개, Belgorod-23개, Bryansk-24개, Vladimir-16개, Voronezh-9개, Ivanovo-10개, Kaluga-16개, Kostroma-7개, Kursk-7개, Lipetsk-9개, Oryol-10개, Ryazan-5개, Smolensk-14개, Tambov-7개, Tver-10개, Tula-7개, Yaroslavl-13개의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 식품통관과 관련하여 2001년 10월 23일 발표된 관세위원회령 1012호는 H.S.Codes 0701-0709 및 0801-0810제품에 대해서 통관세관 및 보세창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다.

<표 9> 세관 리스트

Western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Ryazan Custom Post, Moscow-South Custom House
Novogireevo Custom Post, Moscow East Custom House
Izhora Custom Post, Moscow North Custom House
Domodedovo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Vidnoye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Gorenky Custom Post, Central Excise Custom House
Aminyevo Custom Post, Central Excise Custom House
Balashikha Custom Post, Shyolkovo Custom House
Leninsky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Narofominsk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Selyatino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Mozhaisk Custom Post, Zelenograd Custom House

<표 10> 보세창고 리스트

Vyazovsky Dom	EuroTransService
Tamrus-M	Balashikha
Meridian	SovInterAutoService
Vtoroy Terminal	Narofominsky Khladocombinat
AsvaCargo	Cola
EuroTechLine	Morp

- ☐ 이후 2002년 1월 8일자 Letter 01-06/479는 H.S.Codes 02, 0710, 2004류 통관 가능 세관 및 보세창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다.

<표 11> 세관 리스트

Izhora Custom Post, Moscow North Custom House
Solnechnogorsk Custom PostZelenograd Custom House
Kolomna Custom Post, Zhukovsky Custom House
Podolsk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Shyolkovo Custom Post, Shyolkovo Custom House
Ryazan Custom Post, Moscow-South Custom House
Kashira Custom Post, Moscow-South Custom House
Altufyevo, Moscow-East Customs House
Preobrajensky, Moscow-East Customs House
Vidnoye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Ochakovo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Western Custom Post, Moscow-West Custom House
Khoroshovo Custom Post, Moscow-North Custom House
Aminyevo Custom Post, Central Excise Custom House
Balashikha Custom Post, Shyolkovo Custom House
Narofominsk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Selyatino Custom Post, Podolsk Custom House
Electrostal Custom Post, Noginsk Custom House
Zhukovsky Custom Post, Noginsk Custom House
Mozhaisk Custom Post, Zelenograd Custom House

<표 12> 보세창고 리스트

Cherkizovo Meat Processing Factory	Tolbino Terminal
Preobrazhensky	Mikoyan Meat Processing Factory
Meridian	Vyazovsky Dom
Ostankino Meat Processing Factory	AsvaCargo
Moscow Khladocombinat	NTS-InTourAuto
Khladocombinat # 7	EuroTransService
Tsaritsino	Morp
Bikom	StroyTerminalService-Balashikha
Shyolkovo Customs Warehouses	Cola
Narofominsky Khladocombinat	Kolomensky Khladocombinat
Kolomensky Khladocombinat	Mercurio
Zhukovsky Khladocombinat	

6. 원산지 규정

기본적인 개념이 서술되어 있는 1993년 5월 21일 승인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연방법령 #500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

제25조(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결정하고 동 상품의 수출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이 요구된다. 상품원산지 결정 원칙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 국제관행을 따른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동 법 규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26조(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동 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 상품을 전적으로 생산하거나 충분히 가공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를 구별해야 할 경우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국가연합체, 관세동맹체 또는 지역이나 국가 일부를 의미할 수 있다.

제27조(특정 국가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다음 상품은 동 국가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로 규정한다.

- a) 동 국가가 독점권을 갖는 지역, 해양, 해저 혹은 대륙붕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 및 수자원 등
- b) 동 국가에서 재배 수확된 농작물
- c) 동 국가에서 양육된 동물류
- d) 동 국가에서 양육된 동물류로부터 얻어진 제품
- e) 동 국가에서 수렵, 하천 및 해양 어로업을 통해 획득한 가금류, 어류 및 기타 해양자원
- f) 동 국가의 공해상에서 동 국가의 선박이나 임대선박에 의한 어로활동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 g) 동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2차 원재료 및 폐기물
- h) 동 국가의 우주선 또는 임대한 우주선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이루어진 첨단과학 제품
- I) 동 조 a ~ h에서 언급한 상품 중 국가에서 독점 생산된 상품

제28조(상품의 충분한 가공 인정 기준)

- 1. 2개국 이상이 상품생산에 관여했을 경우 원산지는 ‘충분한 가공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2. ‘충분한 가공’이 적용되는 기준은
 - a) 상품의 가공결과 상품분류코드상 첫 4자리 숫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 b) 상품의 제조 혹은 기술적인 처리가 해당국을 상품원산지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은 경우

- c) 원상품의 가공에 소요되는 자료의 가격이나 부가된 가치의 비중이 공급된 원상품의 가격 수준과 같아지는 정도로 상품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다음은 '충분한 가공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관 또는 수송시 상품보관 관련 공정
- 상품의 판매 또는 수송 관련 공정(상품의 분류, 선별 또는 포장 등)
- 단순조립공정 원상품의 어떤 성질의 변화없이 단순한 부품조립

3. 특정상품 또는 우너산지와 관련하여 특정방법으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 분류코드 첫 번째 4자리 숫자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하는 공통된 방법이 적용된다.
4. 특정상품의 충분한 가공인정기준은 동 법 러시아연방 정부가 규정한 특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9조(위임계약에 따라 수송중인 상품의 원산지 결정)

분해 또는 조립 이전 상태의 상품이 여러개의 계약에 따라 수송되거나, 생산 또는 수송 관련 이유로 1개의 계약으로 이를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러 가지의 화물로 분리되어 수송되거나, 과실로 인하여 동상품이 여러 화물로 제각기 수송되었을 경우 세관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동 상품은 단일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a) 조립 또는 비조립 상품을 여러 화물로 분리한 이유 및 각 화물의 상품분류코드 및 원산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기록과 함께 분해 혹은 조립 이전상태로 수입한다는 사실을 관세당국에 사전 통보
- b) 상품이 여러 화물로 분리된 과실을 증명하는 문서
- c) 제각기 분리수송된 화물이 동일 공급자 및 동일국가로부터 발송
- d) 제각기 분리수송된 화물이 동일한 세관으로 반입
- e) 제각기 분리된 화물이 세관신고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첫 화물 신고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송

제30조(원산지 증명)

- 1.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러시아 세관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 2. 러시아 관세구역으로부터 상품이 수출될 때 계약서, 상품수입국의 규정 또는 국제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러시아 공인기관에 이를 발부한다.
- 3. 러시아 관세구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a) 러시아 정부가 관세체계에 따라 관세우대 혜택을 부여한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
 - b) 특정 상품수입 원산지가 대외경제활동규정 또는 쿼터제의 규제를 받는 상품

- c)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환경보호, 공공보건, 소비자 권리 보호, 공공질서, 국가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이나 기타 러시아 연방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품의 경우
- d) 러시아 연방 세관신고서 또는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자료가 결여되었을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품목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세관 신고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상품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동 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상품이 원산지 구분 요건에 부합한다는 발송인의 문서
 - b)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당사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동 증명서에 대한 확인서
2.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신고서 및 기타 세관신고와 관련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제반 자료의 정확성 및 증명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경우 러시아 연방 세관당국은 동 증명서를 발급한 공인기관 또는 문서상 원산지로 기록된 해당국가의 기타기관에게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인된 증명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해당국이 원산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2조(통관 거부)

1. 러시아 세관당국은 러시아 관세구역선에 반입되는 상품이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조약 및/또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반입된 상품의 경우에만 통관을 거부할 수 있다.
2. 원산지 관한 공인된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신뢰할 만한 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러시아 관세규정이 요구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한다.

제33조(원산지 결정 관련 부가적 규정)

1. 통관일자로부터 1년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최혜국 또는 우대조건이 부여(혹은 회복)될 수 있다.
2.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생산에 사용된 전력, 장비, 공구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직접선적 및 긴급구매’ 규칙의 적용절차와 러시아연방내 자유무역지대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반입된 상품 등을 포함하여 제3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에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7. 관세 평가 제도

- 수입품의 관세는 관세,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분이 된다. 러시아 관세법 제 13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자가 먼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다음은 수입상품의 관세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 및 적용절차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이다.

상품의 관세산정기준 가격

제12조(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체계)

1.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의 적용절차는 동 법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2. 수출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13조(관세산정기준가격의 신고)

1. 관세산정기준가격은 상품신고자가 러시아 관세구역 통과시 러시아 관세당국에 신고한다. 수입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신고절차 및 신고서 양식 등은 러시아 연방관세법에 따라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에서 설정한다.
2. 관세산정기준가격산정방식은 신고자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관세산정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특정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은 상품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기관이 결정한다.

제14조(비밀의 보장)

세관직원은 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의 일환으로 제시한 상업비밀 또는 비밀문서 등을 검사하되 신고자의 허락없이 제3자 또는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단, 신고자의 승인이 있거나 러시아 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시아 관세당국 또는 직원에 상업비밀 또는 비밀문서 등을 공개했을 경우 러시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신고자의 권리와 의무)

1. 신고자는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거짓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자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이 제출된 자료의 진위에 대해 조금의 의문이라도 제기하는 경우 통관신고자는 이 자료의 진위를 입증할 권한이 있다.

3. 통관신청자가 상품통관가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관당국에 자산이나 수입은행의 보증하에 통관신청자는 러시아관련 법률에 따라 동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이 산정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검사하는 과정 또는 러시아 세관원에 제시되는 추가자료 제공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통관신청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관련세금의 납부유예등에 고려하지 않는다.

제16조(세관의 권리와 의무)

1.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은 동 법 제15조에 의거, 세관 신고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었거나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자체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한 절차와 이에 관한 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은 신고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내에 관세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4. 통관신청자가 세관당국의 관세산정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불복할 경우 러시아연방 관세법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탄원할 수 있다.

제17조(산정, 지불 및 부과)

1.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 지불 및 부과는 러시아연방 관세기본법을 기초로 산정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징수된 관세는 러시아연방 공화국 예산으로 편입된다.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 및 적용절차

제18조(관세산정 기준가격 산정방식)

1.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재화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 a)수입상품 거래가격
 - b)동일상품 거래가격
 - c)유사상품 거래가격
 - d)상품가격 공제방식
 - e)상품가격 증액방식
 - f)기타

2.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은 수입가격을 기초로 한다. 동 주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이 사용되며, 다음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비용공제 및 추가는 어떤 방식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수입상품 거래가격 방식)

1.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부와 대상가격은 상품이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을 통과할 시점(항구나 기타 수입장소)에서 상품에 대한 실제 지불가격 또는 지불 예정 가격을 의미한다.

동 상품가격에 사전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관세산정기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a) 공항, 항구 등 러시아연방 관세구역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운송비-선적, 하역, 수송 중간에서의 하역 및 재선적 비용 등-보험료
 - b) 구매자가 지출한 비용상품구입 중계료를 제외한 기타 커미션 및 중개수수료-상품분류코드상 단일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컨테이너 및 기타 재사용이 가능한 운반포장 등의 비용-상품포장에 소요된 노무비, 상품포장재 비용 등을 포함한 상품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 c) 평가대상상품의 제조 또는 상품시장개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지불한 아래 상품 및 서비스 비용-평가대상상품의 중요부품이 중요부품이 되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기타 상품의 주요부품-평가대상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장비, 도금, 주형, 공구 등-평가대상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윤활유, 연료 등의 물자르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평가대상상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또는 러시아 영역외에서 이행된 연구개발, 디자인, 실험, 스캐치, 제도 등의 용역
 - d) 구매자가 평가대상상품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라이선스 및 지적 소유권 사용 비용
 - e) 러시아연방내에서 평가대상상품의 재판매, 이전 또는 활용을 통한 판매자의 직간접 소득액
2. 상기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평가대상상품을 구매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규제가 존재할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 러시아연방법이 설정하는 규제
 - 상품 재판매지역의 규제
 -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
 - b) 상품의 판매 및 거래가격이 해당 조건의 준수로 생기는 영향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는 변수에 의존할 경우
 - c) 관세신고자가 신고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충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d) 거래 당사자가 상호의존관계일 경우. 단, 거래당사자 상호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자가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는 제외된다. 상호의존관계라 함은 아래와 같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 거래 당사자 양측 중 1인 또는 거래당사자가 내세운 대표인이 동시에 상대측의 대표인이 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기업의 공동소유자인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상호노무관계에 의한 경우
-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측 정관자본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자산의 소유자인 경우
-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의 조정을 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조정을 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조정을 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쌍방 또는 그들 대표인이 상호의존적 관계일 경우

제20조(동일 상품 거래가격 산정방식)

1. 동일상품 거래가격 산정방식을 이용할 때,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동 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동일상품 거래가격에 해당되어야 한다. 동일상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상품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말한다.

- 상품의 형
- 원산지
- 생산자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상품 요건에 부합하는 한 외형상의 미미한 차이는 동일상품으로 구분되는 요건과 무관하다.

2. 동일상품 거래가격이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동일상품이 러시아연방에 수입 판매된 경우
- b) 동일상품과 동시에 수입 또는 90일 이전에 수입된 상품
- c) 동일한 수량의 수입 또는 동일한 상업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동일상품이 다른 수량 또는 다른 상업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통관 신고자는 해당가격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하며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으로부터 동 수정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다.

3. 동일상품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된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동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통관신고자 서류도 확인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4. 동 방식 적용시 한 개 이상의 동일상품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에 적용된다.

제21조(유사상품 거래가격 방식)

1. 유사상품 거래가격 평가방식은 동 조에서 의미하는 유사상품가격에 근거하여 관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상품이라 함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성격, 부품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 상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상품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질적 수준, 상표 및 평가정도
 - 원산지
 - 생산자
2. 유사상품 거래가격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은 동 법 제20조2 ~ 4항이 적용된다.
3. 관세부와 대상가격 산정방식 적용은 동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근거할 경우
 - a) 상품원산지가 다를 경우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b) 평가대상 상품 생산자에 의해 제작된 유사 또는 동일 상품이 없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c) 상품디자인 및 개발, 설계, 스케치 및 기타 유사작업 등이 러시아연방내에서 이행되었을 경우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22조(상품가격 공제방식)

1.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이 러시아연방내에서 원래상태에서 변형없이 판매될 경우에 상품가격 공제방식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2.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이 판매자와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된 이후 90일 내에 대부분이 판매된 경우 상품가격 공제방식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3. 상품가격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공제한다.
 - a) 러시아연방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상품 판매로 인하여 지출하는 중개료, 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제지출
 - b) 러시아연방으로 상품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지출
 - c) 수송, 보험, 선적, 하역 등 러시아 연방에서 소요된 제지출
4.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 등이 수입 당시 원상태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동 조 2항 및 3항에 준하여 관세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추가방식)

추가된 비용을 기초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비용이 계산된다.

- a) 평가대상상품을 생산자가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자재 및 기타 비용
- b) 러시아 관세구역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수송, 선적, 하역 및 보험 등을 포함하여 동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에서 판매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

c) 수출자가 상품을 러시아연방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

제24조(기타)

1. 동 법 제19조~제23조에 규정된 산정방식으로 세관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세관 당국이 상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한 경우, 동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국제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 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자에게 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기타 방식에 의한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시 다음과 같은 것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 a) 러시아연방 내수시장 상품가격
 - b) 러시아 내수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상품가격
 - c) 수출국가로부터 제3국의 국가로 수출된 상품가격

8. 수입 관세의 구분 및 종류

□ 러시아의 수입 관세는 기본적으로 개도국과 최혜국, 비최혜국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 적용된다. 우선 일본, 미국, 독일 등 러시아 연방과 최혜국대우 조약을 체결한 119개 국가들은 0~30%(평균11%)의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고, 다음으로 중국, 홍콩, 태국, 한국등 101개 국가군들로 구성되는 개도국 범주에는 최혜국 관세의 75%수분인개도국 관세가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그 외 국가들은 최혜국 관세의 2배인 0~60%(평균 22%)의 비최혜국관세를 적용 받는다. 또한 원산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비최혜국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 이어나 기반 위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통관가격에 의한 종가세와 수량에 의한 종량세를 조합한 혼합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야채나 과일 등 계절적 수입요인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절세가 추가로 산정된다.

9. 관세 특혜

- 러시아 관세율법과 관세 기본법은 관세상의 특혜를 통상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러시아의 관세 경계선을 통관하는 상품에 대해 선불한 과세의 반환, 관세의 면제, 관세율의 축소, 상품수입에 따른 특혜관세 할당 및 설정의 형식으로 상호간 또는 일반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특혜라고 해석되고 있다.

- 이러한 러시아 수입관세에 대한 특혜는 1993년 8월 국가관세위원회령 제215호 폐지와 1994년 9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도국 관세혜택 철폐 및 철폐품목 확대에 크게 축소된 이래 그 동안 조금씩 위축되어 왔다. 최근에는 1999년 1월 러시아 정부 결정 제68호에 의해 개발도상국가 및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부과되어왔던 6개월간의 특혜관세가 대폭 축소되고 관세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러시아 정부의 관세특혜 축소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크게 관세면제와 일반특혜관세(GSP)로 구분되는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특혜 중 러시아 영내로의 상품 반입시 무관세혜택이 부여되는 관세면제는 다음과 같다.
 -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수단, 우간다 등 46개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
 - CIS 영내 국가로부터의 수입,
 - 국가, 정부 국제기구를 통해 무상원조 및 자선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상품,
 - 제3국을 목적지로 하여 세관 관리하에서 러시아 영내를 경유하는 상품의 경우
 - 외국으로 여행하는 개인이 \$2,000미만의 생필품 반입시(차량제외)

- 관세위원회가 정한 수량 한도 내에서 제외법인이 개인용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

그러나 이러한 관세면제 혜택도 최근 러시아 정부가 CIS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시 원산지확인 과정에서 종전에는 상품첨가서류만으로도 가능했던 품목들까지도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감독 강화에 주력하면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 개도국산 제품에 대하여 일반 관세의 25%를 감면해주는 일반 특혜 관세(GSP)혜택은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 A형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GSP품목을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GSP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대상품목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 있다.

□ 1999년 4월 26부터 GSP혜택품목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식품류 중 적용되는 품목은 곡물(쌀 제외), 해바라기 씨 기름, 설탕, 초콜릿, 담배이다. 대상국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터키 등 104개국이다. 러시아 무역부의 관세 및 GSP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GSP 수혜국가의 변경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현 1인당 GDP수준 US\$2,400(₩1,000,000)을 넘어서는 개도국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을 제외할 방침이다.

10. 기타 관세 관련제도

□ 러시아 정부는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부로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20%(일부 품목은 25%)로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입물품의 매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수입 시 관세납부 및 통관사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양식도 변경한 상태이다.

□ 소비세(Excise Tax)

- 러시아 영내로 수입되는 상품은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부과되는데 소비세는 국산품과 외국상품 모두에 일원화되어 적용하고 있다.

소비세는 1998년 2월 18일부터 2,5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10~20%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1998년 12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금융위기 사태에 따른 재정고갈을 만회키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예산 조세정책분야에 있어서 긴급조치에 관한’ 연방법 제192-R호를 통해 석유와 보석장식품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소비세를 20~25%로 재인상 하였다. 현재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품목은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 목적으로 한 품목들인데, 이에에는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 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다.

소비세의 산출은 $CV(\text{관세가액}) \times EXR(\text{소비세율}) / 100$ 이다.

□ 부가가치세(VAT)

-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현재 다음의 면세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과되고 있다. 용도별로 8개 면세분야에 속해 있는 품목들은 외교관용 물품, 화폐 및 증권, 원조용품, 의료용 물품 및 생산용 원자재, 물수품과 국가 소속물품, 장애자용품, 연구용 설비.기기,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의 차관지원으로 수입하는 경우, 합작기업의 설립자본금의 일부로 들어오는 경우, 등록된 외국지사가 사무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및 사무용기기 등이다.
- 당초 부가가치세는 상기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1995년 11월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정부령 1120호에 의거, 대부분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8년 8월 1일부터 세수 확보차원에서 약 3개월 동안 10%의 부가가치세 적용 품목이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유아용 식품과 유아용 제품, 빵과 우유 등 일부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20%의 단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이루 부가가치세는 러시아내 식량난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1998년 10월 15일부로 러시아 연방 정부 결정 제 1203호를 통해 대부분의 식품류에 대해 다시금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적용되고 있고 식품류 중 10%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빵, 빵제품,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제외), 어린이 식품, 다이어트 식품

□ 계절관세

러시아 연방에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러시아연방은 계절세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관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중기 조세우대제도 실시

2003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중소기업들에 대한 간소화된 조세 우대제도가 실시되었다. 연간 매출액이 1천 5백만 루블(약47만 달러) 미만이고 종업원 100명 이하인 러시아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6%또는 순이익의 15%, 둘 중의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기업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윤세, 재산세 전액 및 통합사회세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은행, 투자기금운용기관 및 특소세 해당 제품 생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이며, 단,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 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세금 적용방식

-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금액의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종량세

통상 ECU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Invoice 금액의 10%, 15%, 20%, 25% 또는 상품의 양(수량 또는 중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종가 및 종량혼합세 : 식품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관세법 124조에 따르면 관세 미 수납분이 발생 시, 언제 동 사실이 발생하였든, 언제 동 사실이 발견되었든 간에 수납을 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 개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따라 관세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한편, 미납부 관세 납부뿐만아니라 벌금도 부과되는데 벌금은 일일 0.3%가산된다. 만약 미납자가 납부할 돈이 없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제재가 들어가며, 납부 지연 노력 적발 시 은행구좌를 정지시킬 수도있다. 관세위원회의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은행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영업면허를 정지 당할 수 있다.

☐ 밀수의 경우 적발 시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여기서 밀수라 함은 《(극도로)많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많은 관세라 함은 약 45만 루블, 극도로 많은 관세라 함은 약 135만 루블이다.(1루블 = 약 35원)

III. 수입검사제도

1. 수입허가사항

- 수입허가 관련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러시아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수입면허
 - 러시아 보건부 등에서 발행하는 서면 수입 허가서
 - GOST안전인증, 품질인증, 위생인증, 수의인증, 식물인증 등의 수입 인증

2. 식품수입 검역, 검사제도 및 관련 기관

검역제도는 수의 검역제도와 식품 검사제도로 나뉘어진다.

가. 수의 검역제도

- 수의 검역은 러시아 국립 수의 검역 서비스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러시아 농업식품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 자치 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 각 지방의 동물 질병연구소, 기타 수의 연구소
 - 지방 수의 병원
 - 국립 수의 검사소등 기타

- 위 기관들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러시아 농업식품부 수의국이다. 수의 국에서는 수출입 관련 수의 검역규정 등을 제정함

□ 또한 1995년 5월 4일 관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영 수의검사기관은 수입되는 동물관련 제품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종류의 동물
- 동물 관련 식품(신선육, 포장육, 지방, 육류 추출물, 소시지, 베이컨, 우유, 치즈, 건조우유, 마가린, 계란, 생선류, 해산물, 꿀 및 관련식품 등)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수의검역 대상품목이 국경을 넘어올 경우 국경 수의검역 담당자는 반드시 모든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출국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의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 증명서 수령 후 국경 수의검역 담당자는 러시아 수의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수의 검역대상 품목은 문서 형태로 만들어진 수의국의 허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수입될 수 있다.
-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 운동30일 이전에 관련지방 수의 검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수입 관련 기초정보 외에도 제품 수출을 허가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수의 검역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 동 신청서를 받은 지방 수의검역기관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러시아 농업식품부에 연방정부 수입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발급하게 된다.
- 연방 정부의 허가서를 받은 이후 수입상은 수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되며 선적도 가능하게 된다.
- 이후 물품 도착 후 국경 수의검역 담당자가 물품 검사 후 기존 연방정부 수의검역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수의검역 서류를 발급한다.

☐ 이렇게 발급 받은 수의검역서류는 추후 세관신고시 제출하게 된다.

나. 식물 검역제도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 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검사담당 직원은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식품 검역제도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표 13> 검역 대상 식물

Item	H.S. Code
Fish flour, granules for food	0305100000
Bulbuses, root tubers, tubers, except H.S. Code 1212	0601
Other alive plants	0602
Cut flowers, flower buds	0603
Leaves, branches, plant parts	0604
Potato, fresh or frozen	0701
Tomato, fresh or frozen	0702 00
Onion and onion-related vegetables, garlic, fresh or frozen	0703
Cabbage of various kinds of the Brassica type, fresh or frozen	0704
Lactuca saliva, Cichorium spp, fresh or frozen	0705
Carrot, turnip, beet, radish etc, fresh or frozen	0706
Cucumber, cornichon, fresh or frozen	070700
Bean vegetables, fresh or frozen	0708
Other vegetables, fresh or frozen	0709
Dried vegetables, whole, cut, in powder, fresh or frozen	0712
Dried Bean vegetables, hulled, coated or not coated, crushed or not crushed etc	0713
Manioc, arrowroot etc	From 0714
Coconuts, Brazil nuts etc	0801
Other nuts, fresh or dried	0802
Bananas etc	0803 00
Dates, figs etc	0804
Citrus fruit etc	0805

Item	H.S. Code
Grapes, fresh or dried	0806
Melons etc	0807
Apples. Pears etc	0808
Apricots, cherries etc	0809
Other fruits, fresh	0810
Dried fruits, etc	0813
Coffee	From 0901
Tea , whether or not flavored	0902
Mate	0903 00 0000
Spices	0904-0910
Weat and meslin	1001
Rye	1002 00 0000
Barley	1003 00
Oats	1004 00 0000
Maize(corn)	1005
Rice	1006
Grain sorghum	1007 00
Buckweat	1008
Wheat flour	1101 00 1100, 1101 00 1500
Weat-Rye flour	1101 00 9000
Cereal flours etc	1102
Cereal groats etc	1103
Cereal grains etc	1104
Flour, meal, powder etc	From 1105
Flour, meal, powder etc	1106 10 0000
Malt	1107
Soya beans	1201 00
Peanuts, not fried, coated or not coated, crushed or not crushed	1202
Copra	1203000000
Lint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4 00
Rape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5
Sunflower seeds, crushed or not crushed	1206 00

Item	H.S. Code
Flours and meals of oil seeds, except those of mustard	1208
Seeds, fruits and spores, used for sowing	1209
Hop cones, fresh or dried, crushed or not crushed	From 1210
Plants and their parts, used in perfumery,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etc purposes	1211
Locust beans, seaweeds, sugar beet etc	1212
Cereal straw and husks etc	From 1213 00 0000
Swedes, mangolds, fodder roots etc	From 1214
Natural shellac, not purified	1301
Vegetable material for plaiting etc	1401
Vegetable materials for stuffing etc	1402 00 0000
Vegetable materials for brooms etc	1403 00 0000
Vegetable materials, not specified etc	1404
Raw sugar, cane or beet	1701 11, 1701 12
Cocoa beans, whole or crushed etc	1801 00 0000
Tapioca and substitutes etc	1908 00 0000
Bran etc	2302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etc	2304 00 000, 2305 00 000, 2306
Vegetable materials	2308 00
Tobacco, not manufactured or in waste	2401

- ☐ 식물 검역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 증명서와 러시아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라 꼭 있어야 한다.
- ☐ 검사후 정부 검역관계자는 검역인증서와 함께 제품 및 운송기기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서류는 국경검역소 또는 세관에서 검역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3.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및 검역현황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검역 규정은 없다.

4. 품목별 상세 검역제도

1) 육류

☐ 아래 두 항목을 충족해야 러시아에 수입을 할 수 있다.

- 건강한 동물을 도살한 것일 것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사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것

☐ 아래 질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 제품만 수입 가능

- Africa swine cholera(최근 3년 간 해당국, 모든 동물에 해당)
- 구제역(최근 12개월 간 해당국, 모든 동물에 해당)
- Spongiform encephalopathy(해당국 소, 염소, 양에 해당)
- Tuberculosis, brucelliasis, leucosis(최근 6개월간 해당 지방 소, 염소, 양에 해당)
- Anthrax, enphysematous carbuncle(소, 염소, 양, 돼지에 해당, Anthrax는 해당 지방에서 6개월 간);
- Blue tongue, cholera and contagious pleuropneumonia(최근 12개월 해당국 염소, 양에 해당);
- Adematosis, arthritis, enthephalitis(최근 3년 간 해당지역 염소, 양에 해당);
- Ovinia(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염소, 양에 해당);
- Swine vesicular disease(최근 12개월 간 해당국가 돼지에 해당);
- Swine classical cholera,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최근

12개월 간 해당국아 돼지에 해당);

- Trichinellosis(최근 3년 간 해당지역 돼지에 해당);
- Reproductive respiratory syndrome(최근 12개월 간 해당 지역 돼지에 해당);
- Diamond-skin disease(최근 20일 간 해당지역 돼지에 해당).

□ 한편 유전자 조작사료를 먹인 육류는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될 수 없다.

- 도살 후 검사에서mouth disease, cholera, tuberculosis, leucosis 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 보존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 냉동육의 경우 뼈 근처의 근육이 -8도이상, 기타 부분이 4도 이상에서 보존되었을 경우
- 내장에서 금지 잔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

2) 가금류 제품

□ 아래 두 항목을 충족해야 수입할 수 있다.

- 건강한 동물을 도살한 것일 것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사를 갖고 이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것

□ 또한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가능하다.

- African swine cholera(해당국 최근 2년)
- Mouth disease(해당지역 최근 12개월)

- Newcastle disease, bird fever, or cholera(해당지역 최근 6개월)
- Ornithosis, Parainfluenza Virus Infection, turkey rhinotracheiti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사육지역 최근 6개월, 닭, 칠면조에 해당)
- Dermal disease, Virus hepatitis of small ducks, Ornithosis(사육지역 최근 6개월)

□ 한편 유전자 조작사료를 먹인 고기도 수입이 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수입할 수 없다.

- 도살 후 검사에서 기생충 및 기타 유독 병원균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이 있을 경우
- 냉동육의 경우 근육 온도가 -18도가 넘을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전염가능한 미생물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가공처리된 경우
- 부패, 변질 징후가 보일 경우

□ 포장은 1회용 이어야 하며,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3)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완전가공 된 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다.

□ 또한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

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이어야 한다.

- ☐ 육류와 마찬가지로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 이외에 포장은 위생규정에 걸맞도록 1회용이며 밀봉되어야 한다.
-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4) 우유 및 유제품

- ☐ 아래 두 항목을 충족해야 수입을 할 수 있다.
동물 전염병이 퍼지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일 것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일 것
- ☐ 또한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 African swine cholera(최근 3년간 해당국) ;
 - Mouth disease, contagious pleuropneumonia and vesicular stomatitis of great cattle(최근 12개월 간 해당국)
 - Brucelliasis of great cattle, leucosis, tuberculosis, para-tuberculosis(최근 12개월 생산지역);
 - Brucelliasis of goat and sheep(최근 2년 간 생산지역);
 - Pox of goat and sheep(최근 6개월 간 생산지역)
- ☐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살모넬라균 및 기타 독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한다.

- 유제품 제조를 위한 우유는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유제품은 제품 품질보장을 위해 재처리 되어야 한다.
- 제품에 나쁜 감각적특징이 있을 경우, 포장에 안전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될 수 있다. 포장은 1회용 이어야 한다.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5)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러시아에 수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품은 African swine cholera(최근 3년간), 구제역(최근 12개월)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 또한, 사료로 유전자 변형식품은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허된다.
 - 온도가 -18도 이상일 경우
 -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 병원균 감염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경우

- 나쁜 감각적 특징이 있을 경우
- 보존기간 중 해동되었을 경우
- 착색제, 자외선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 자연적/인위적 extra-gen and hormone agents, thireostatic agents, antibiotics, pesticides 등의 경우 수입이 제한 될 수 있다. 포장은 위생규정에 부합하도록 1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하다.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6) 계란 및 관련제품

☐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육된 건강한 지역에서 사육된 조류로 나온 제품이며 수출국 위생검사 기관의 통제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다.

☐ 한편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수입 될 수 있다.

- African swine cholera(최근 3년간);
- Mouth disease(최근12개월 간);
- Ornithosis, Parainfluenza Virus Infection, infectious bronchitis of chickens,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infectious encephalomyelitis, Newcastle disease, bird fever(최근 12개월 간).

☐ 또한 유전자 변형 사료로 사육되지 아니한 조류로부터 생산된 달걀이어

야 한다.

- ☐ 나쁜 감각적 특징이 있을 경우 또는 초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살모넬라균 등 유해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경우, 화학처리 되거나 자외선 처리되었을 경우 등은 수입이 불허된다.
- ☐ 계란 가공제품은 안전보장을 위해 재처리 되어야 하며 포장은 1회용이어야 한다.
- ☐ 해당국의 검역기관은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의 인증을 자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이 러시아로부터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제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안된다.

IV. 식품위생제도

1. 식품 표시 제도(Labeling)

- ☐ **현행 러시아 소비자권리 보호법에 따르면 식품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품 겉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체명, 주소, Contact point
 - 제품명 및 상세 specification(식품 첨가제사용여부를 포함한 제품 성분, 중량, 등급, 사이즈, 칼로리 정보, 보존방법, 조리 방법 등)
 - 제품 표준(GOST, TU 및 기타 국제제품 Standard 또는 인증)
 - 제품 생산일 및 유효기간

- ☐ **이외에 '식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에는 라벨링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라벨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칼로리 및 영양정보
 - 용도(아동용, 환자용 등)
 - 조리방법(반제품 등의 경우)
 - 보존 방법
 - 생산 및 포장일

- ☐ **한편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류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제품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러시아어 정보를 별도로 스티커에 인쇄,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 ☐ **식품별 라벨링 규정**
육류 및 육류 가공품 : 도체(부분품 포함)의 경우생산업체 표시와 함께 수출국 검사기관에서 검사칠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포장육의 경우에는 포장에 이러한 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가금류 제품 : 포장에 검사필 도장이 있어야한다.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완전 가공된 육류 : 포장에 검사필 도장이 있어야 한다.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상동

계란 및 관련제품 : 상동

2. 수입식품의 성분, 식품 첨가물(첨가가능, 금지목록)

☐ 가능한 식품 첨가물

아래 수입가능 식품 첨가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dex Alimentarius”로 표시되어 있다.

E100, E101, E102, E103, E104, E107, E110, E120, E122, E124, E128, E129, E131, E132, E 133, E140, E 141, E142, E143, E 150a, E150b, E150c, E150d, E151, E152, E 153, E 155, E 160a, E 160 b, E 160 c, E160 d, E160 e, E160f, E161a, E161b, E161c, E161d, E161e, E161f, E161g, E162, E163, E170, E171, E172, E174, E175, E181, E182, E200, E 201, E202, E203, E209-E228, E230-E239, ,E241, E242, E249-E252, E260-E266, E270, E280-E283, E290, E296, E297, E300-E312, E314-E323, E325-E343, E345, E349-E359, E363, E365-E368, E375, E380, E381, E383-E387, E391, E400-E407, E407a, E409-E422, E430-E436, E440, E442, E444-E446, E450-E452, E459-E471, E472a, E472b, E472c, E472d, E472e, E472f, E472g, E473-E484, E491-E496, E500, E501, E503-E505, E507-E511, E513-E530, E535, E536, E538, E539, E541, E542, E550-E556, E556, E558-E560, E570, E574-E580, E585, E620-E637, E640-E642, E900-E904, E905a, E905b, E905c, E906, E908-E911, E913, E920, E921, E927a, E927b, E928, E930, E938, E942, E943a, E943b, E944-E946, E948, E950-E955, E957-E959, E965-E967, E999, E1000, E1001, E1100-E1105, E1200-E1202, E1400-E1405, E1410-E1414, E1420-E1423, E1440, E1442, E1443, E1450, E1451, E1503, E1505, E1518, E1520, E1521.

<표 14> 기타 가능한 첨가물

명 칭	Type
Artificial mustard oil	Conserving agent
Lauroyl Glutamic Acid	Conserving agent, flour and bread improving agent
Lauroyl Asparaginic Acid	Conserving agent, flour and bread improving agent
Lauroyl Glycine	Conserving agent, flour and bread improving agent
Vanillin	Flavoring agent
Dihydro Meletin	Oxidation preventive
Imbricine	Conserving agent
Meletin	Oxidation preventive
Red for caramel # 1	Coloring agent
Red for caramel # 2	Coloring agent
Red for caramel # 3	Coloring agent
Red rice	Coloring agent
Acantophyllum sp., concoction, density-1.05	Stabilizer
Oxyethyl Succinate-21	Emulgent
Polyvinyl Alcohol	Moisture deterring agent
Hydric Dioxide	Conserving agent
Polyoxyethylene	Brightening agent
Santohin	Conserving agent
Stevia rebaudiana Bertoni, leaf powder and leaf syrup, stevioside	Sweetening agent
Sopdium, Potassium and Calcium Succinate	Acidity regulating agent
Ultramarine	Coloring agent
Potassium Formate	Conserving agent
Chitosan, Chitozonium Hydrochloride	Filling agent, gelling agent, stabilizer
Ferrum Chloride	Flour and bread improving agent
Juglone	Conserving agent

- ☐ “ Food Product Certification Center of the Nutrition Institute of Russia’s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에서 검사 결과 아래 제품은 첨가 금지된 물품이다.

<표 15> 금지 식품 첨가물

“Codex Alimentarius” Code	Name
E121	Citrus Red 2 Coloring Agent
E123	Red Amaranth
E240	Formaldehyde, coloring agent

☐ 한편 아래 제품은 “Food Product Certification Center of the Nutrition Institute”에서 해로운 것으로 판명된 제품이다.

- cancer dangerous- E105, E121, E123, E125, E126, E130, E240, E447;
- allergy dangerous- E313;
- kidney disease dangerous- E173.

☐ 또한 아래 제품은 자세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금지된 품목이다.

E125, E127, E154, E166, E173, E180, E233, E324, E344, E370, E388-390, E399, E408, E429, E441, E443, E485-E489, E512, E537, E557, E916-E919, E922, E923, E924b, E925

3. 식품 검사제도, 검사방법, 검사기준, 식품검사 등록 및 수검절차

☐ 식품 검사 관련된 업무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한다.

☐ 여기서 식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제품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 미네랄 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응품, 씨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류 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 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 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 제품 검사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제품검사 신청서 등록 및 제출
- 검사에 필요한 샘플 수량 결정
- 검사 관련 비용 계약 체결
- 제품 관련 서류 검사
- 제품 테스트
- 검사 결과 후 결정
- 제품 검사증명서 발급

□ 검사를 받기 위한 제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제조업체 작선)
- 안전인증(수출국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 검사 결과서(수출국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 적당한 수량의 샘플
- 자세한 제품 설명서
- 라벨 샘플
- 수입계약서 또는 러시아 검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자료

□ 규정에 따르면 제품에 따라 검사기간이 다르나 검사 시작후 두달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달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 수입 통관시 GOST 안전인증이 제출되어야 하며, 동 인증에 위생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H.S.Code 21로 시작하는 식품 첨가물 통관시는 GOST 안전인증과 식품검사필증이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4. 잔류 농약 허용 기준

<표 16> 육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표 17> 우유 및 유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표 18> 생선, 해산물 및 관련 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20	Sea water, sea animal meat
	0.03	Fresh water
DDT and its metabolites	0.20	Sea water
	0.30	Fresh water
	2.00	Sturgeon, salmon, fat herring
	0.20	Marine animal meat
2.4 D acid, its sols and esters	forbidden	Fresh water

<표 19> 곡 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0	
DDT and its metabolites	0.02	
hexabenzol	0.01	wheat
Hydrargyrum Organic Pesticides	Forbidden	
2.4 D acid, its sols and esters	forbidden	

<표 20> 설 탕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표 21> 신선/냉장 채소(감자, 과일, 버섯 등)

Nitrates	Not more than mg/kg	Item
Pesticides	250	Potato
	900	Cabbage(before September 1)
	500	Cabbage(after September 1)
	400	Carrot(before September 1)
	250	Carrot(after September 1)
	150	Tomato
	300	Tomato, protected ground
	150	Cucumber
	400	Cucumber, protected ground
	1,400	Table Beet
	80	Bulb onion
	600	Sprouting onion
	800	Sprouting onion, protected area
	2,000	Leaf vegetables(lettuce, spinach etc)
	200	Sweet pepper
	400	Sweet pepper, protected ground
	400	Marrow
	60	Watermelon
	90	Melon
hexachlorocyclohexane	0.1	Potato, green peas, sweet beet
	0.5	Vegetables, cucurbits crop, musrooms
	0.05	Fruits, berries, grapes
DDT and its metabolites	0.1	

<표 22> 해바라기 씨, 콩, 옥수수 및 견과류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Items
hexachlorocyclohexane	0.20	Soya, cotton plant
	0.40	Line, mustard, rape
	0.50	Sunflower, peanut
DDT and its metabolites	0.05	Soya, cotton plant
	0.10	Line, mustard, rape
	0.15	Sunflower, peanut

<표 23> 식물성 기름(모든 종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Items
hexachlorocyclohexane	0.20	
	0.05	Refined
DDT and its metabolites	0.20	
	0.10	refined

<표 24>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지방(냉동/냉장) ; Salt pork(냉동/냉장)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2
DDT and its metabolites	1.0

<표 25> 쇠고기의 버터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0

<표 26> 동/식물 지방으로 만든 지방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0

<표 27> 생선 지방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2

<표 28>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0	From cereals, corn, beans(except soya), sunflower, peanuts
	0.40	From line, mustard and rape
	0.20	From soya, cotton plant
DDT and its metabolites	0.15	From sunflower, peanuts
	0.10	From line. mustard, rape
	0.05	From beans, cotton-flower, corn
	0.02	From cereals

<표 29> 우유 혈청 단백질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1.25
DDT and its metabolites	1.00

<표 30> 곡물 씨의 배아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0
DDT and its metabolites	0.02

<표 31> 곡물 또는 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0
DDT and its metabolites	0.01
Hydrargyrum Pesticides	Forbidden

<표 32> 젤라틴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표 33> 녹말, 당밀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50	From Corn
	0.10	From Potato
DDT and its metabolites	0.05	From Corn
	0.10	From Potato

<표 34> 건조 고형 고기 수프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표 35> 영양섬유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Made From Nutritive Fibers
(Cellulose, Acacia, Pectin, Micro-Crystal Cellulose etc)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0
DDT and its metabolites	0.02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36> 순수 물질 또는 이의 농축액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Pure Substances
(Vitamins, Mineral Substances, Organic Acids) Or Their
Concentrate(Herb Extracts), Made With Various Filling Substances
(Including Dry Concentrates For Making Beverag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5
DDT and its metabolites	0.10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37> 허브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Herb-Based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38> 육류 및 유류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ased On Raw Meat And Milk
Processed Product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39> 생선 및 해산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2
DDT and its metabolites	2.0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40> 미생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5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41> 단세포 수중생물(Spirulin, Chlorella).
또는 효모등으로 만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식품 첨가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 유·소아 기준 잔류 농약 허용 기준

<표 42> The adapted dairy mixes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43> 응유 및 응유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55
DDT and its metabolites	0.33

<표 44> 조리용 밀가루 및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Hexachlorbenzol	0.01
Hydrargyrum Organic Pesticides	Forbidden
2,4-D Acid, its salts and esters	Forbidden

<표 45> 과일이나 야채로 만든 이유식 및 과일이나 야채로 만든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10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50.000	Fruit-based
	200.000	Vegetables, Vegetables and Fruits-based(including bananas)

<표 46> 내장, 머리등을 포함한 고기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ites	forbidden

<표 47> 고기와 야채를 섞은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ates	150.00	For canned products, containing vegetables
Nitrites	Forbidden	

<표 48> 생선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Polychlorinated Biphenyls	0.50
Gistamin	100.00
Nitrozamin	Forbidden

<표 49> 생선과 야채를 섞은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Polychlorinated Biphenyls	0.20
Gistamin	40.00
Nitrozamin	Forbidden

<표 50> 인스턴트 허브 차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 소아 및 청소년을 기준으로 한 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표 51> 고기 통조림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Nitrites	forbidden

<표 52> 소시지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0
DDT and its metabolites	0.010
Nitrites	30.000
Nitrozamins	0.002

<표 53> 빵류 및 곡물을 빵은 가루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Benzpyrene	forbidden

□ 어린이를 위한 치료용 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표 54>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55> 분리된 콩의 단백질로 만든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56> 일상용의 건조 고단백질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57> 전체 또는 부분적인 가수분해 효소 단백질로 만든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58> 1세이상을 위한 무페니알라닌 또는 저페니알라닌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59> 우유를 재료로 승화시켜 만든 식품(응유제품 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3

<표 60> 육류를 재료로 승화시켜 만든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61> 식물을 재료로 승화시켜 만든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1
DDT and its metabolites	0.1
Heptachlor	Forbidden
Aldrin	Forbidden

<표 62> 조산한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05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 임산부 또는 수유를 하는 여성 기준 잔류농약 허용기준

<표 63> 분리된 콩류 단백질로 만든 일상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64> 우유 및 곡류로 만든 죽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01
Benzpyrene	forbidden

<표 65> 야채 및 과일로 만든 식품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0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200.000

<표 66> 인스턴트 허브 차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 어린이 건강을 위한 원료 및 성분으로 쓰이는 식품을 기준으로 한 잔류
농약 허용 기준

<표 67> 신선한 과일 및야채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0
DDT and its metabolites	0.005
Nitrates	
Beet	600.000
Cabbage	400.000
Vegetables, Banana	200.000
Fruits	50.000

<표 68> 과일 주스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10	
DDT and its metabolites	0.05	
Nitrates	100.00	Fruits

<표 69> 육 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Comments
hexachlorocyclohexane	0.010	For Children, Aged Under 3
	0.005	For Children, Aged Over 3
DDT and its metabolites	0.010	For Children, Aged Under 3
	0.015	For Children, Aged Over 3

<표 70> 육류의 내장이나 머리등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5
DDT and its metabolites	0.015

<표 71> 가금류의 육류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72> 생 선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DDT and its metabolites	0.01

<표 73> 식물성 기름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1
DDT and its metabolites	0.10

<표 74> 소의 버터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0.02

<표 75> 설 탕

Pesticides	Not more than mg/kg
hexachlorocyclohexane	Forbidden
DDT and its metabolites	Forbidden

5. 유전자 변형 식품 현황

- 2000년 11월 보건부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포장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법에 따르면 러시아로 생물학적으로 변형된 제품 수입시에는 위생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고, 2001년 11월 14일 러시아 보건부는 명령 36호로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구분하였다.

<표 76>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Soya	Soya Beans
	Soya Plantlet
	Soya Protein Concentrate And Its Textured Forms
	Soya Protein Isolate
	Soya Protein Hydrolizate
	콩가루
	Soya Milk
	Soya Dry Milk
	Canned Soya
	Cooked Soya Beans
	Roasted Soya Beans
	Roasted Soya Flour
	Food, Made From Soya Protein Isolate, Soya Protein Concentrate, Soya Protein Hydrolizate, Soya Flour, Soya Dry Milk
	Fermented Soya Food
	Soya Paste And Related Food
	Soya Sauce
	Food, Made From Soya Milk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Corn	Corn For Direct Use As Food(Flour, Groats etc)
	Frozen And Canned Corn
	Popcorn
	Corn Chips
	Flour Mixtures, Containing Over 5 % Of Corn Flour
Potato	Potato For Direct Use
	Potato Mash, Dry(Semi-Product, Quickly Frozen)
	급냉동된 반조리 식품
	Potato Flakes (Semi-Product, Quickly Frozen)
	Potato Chips(Semi-Product, Quickly Frozen)
	Potato Crackers(Semi-Product, Quickly Frozen)
	Roasted Potato Sticks, Slices, Straws
	감자로 만든 농축물
	인스턴트 감자 제품
	감자 통조림
	멜라사
Tomato	Tomato For Direct Use As Food(Natural, Solid-Pack)
	Tomato Paste
	Tomato Mash
	Tomato Juice, Drinks
	Tomato Sauce, Ketchup
Marrow	Natural Marrow
	Marrow-Based Food
Melon	Natural Melon
	Melon-Based Food
Papaya	Natural Papaya
	Papaya-Based Food
Chicory	Chicory-Based Food
Food Additives	Food Additives, Made From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 Components

<표 77>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Food Raw Material	Foodstuff Item
Soya	Soya Oil, Refined
	Soya Lecithin
	Fructose
Corn	Corn Oil, Refined
	Corn Starch
	Maltodextrins
	Corn Starch Syrup
	Glucose
	Fructose
	Molasses
Sweet Beet	Sugar
	Glucose
	Fructose
Potato	Potato Starch
	Glucose
	Oligo-Sugar
Rape	Rape Oil And Related Items
Line	Line Oil And Related Items
Cotton Plant	Cotton Plant Oil And Related Items

V. 수입규제제도

1. 수입 관세 쿼터제도

- 쿼터제도는 1995년 10월 13일 “대외교역에 있어 국가의 규제” 법률에 규제되어 있는 러시아의 자국 생산자 및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러시아의 WTO가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 쿼터의 배분은 입찰, 경매 등을 통해 배정되는데 주로 전년도 수입량과 비교해 배정된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유행병이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입량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상황을 감안하여 배정되기도 한다. 수입식품 쿼터는 보통 국내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데 2006년 현재 적용되는 품목은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에 적용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2003년 1월 23일 육류 수입제한 관련제도를 실시 하였다. 2003년 4월부터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에 수입 관세 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다음은 육류의 품목별, 연도별 수입할당량이다.

<표 78> 2005년 육류 수입 할당량

품목	H.S.Code	전체 (천톤)	국가별 할당량(천톤)			
			EU	미 국	파라과이	기 타
가금류	0207	1,045.0	205.0	771.9	5	63.1
쇠고기 (냉동)	0202100001, 0202201001, 0202203001, 0202205001, 0202209001, 0202301002, 0202305002, 0202309002	430.0	339.7	17.7	3	69.6
쇠고기 (냉장 또는 신선한 것)	0201100001, 0201202001, 0201203001, 0201205001, 0201209001, 0201300002, 0201300003	27.5	27.0			0.5
돼지고기	0203111001, 0203119001, 0203121101, 0203121901, 0203129001, 0203191101, 0203191301, 0203191501, 0203195501, 0203195901, 0203199001, 0203211001, 0203219001, 0203221101, 0203221901, 0203229001, 0203291101, 0203291301, 0203291501, 0203295501, 0203295901, 0203299001	467.4	236.0	53.8	1	176.6

<표 79> 2006년 육류 수입 할당량

품목	H.S.Code	전체 (천톤)	국가별 할당량(천톤)			
			EU	미 국	파라과이	기 타
가금류	0207	1,130.8	220.6	841.3	5	63.9
쇠고기 (냉동)	0202100001, 0202201001, 0202203001, 0202205001, 0202209001, 0202301002, 0202305002, 0202309002	435.0	343.7	17.9	3	70.4
쇠고기 (냉장 또는 신선한 것)	0201100001, 0201202001, 0201203001, 0201205001, 0201209001, 0201300002	27.8	27.3	-	-	0.5
돼지고기	0203111001, 0203119001, 0203121101, 0203121901, 0203129001, 0203191101, 0203191301, 0203191501, 0203195501, 0203195901, 0203199001, 0203211001, 0203219001, 0203221101, 0203221901, 0203229001, 0203291101, 0203291301, 0203291501, 0203295501, 0203295901, 0203299001	476.1	240.5	54.8	1	179.8

□ 관세율의 적용(2006년 현재)

- 가금류 : 25%, 단 1kg당 0.2유로 이상,
할당량 초과시 60%, 단 1kg당 0.48유로 이상
- 쇠고기 : 냉동한 것-15%, 단 1kg당 0.15유로 이상
할당량 초과시 40%, 단 1kg당
0.40유로 이상
냉장 또는 신선한 것-15%, 단 1kg당 0.2유로 이상
할당량 초과시 40%, 단 1kg당
0.40유로 이상,
단 H.S. Code0202 30 1003, 0202 30 5003, 0202 30
9003, 0201 30 0003은 1000kg당 3000유로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 돼지고기 : 15%, 단 1kg당 0.25유로 이상
할당량 초과시 60%, 단 1kg당 1.00유로 이상

2. 수입 면허 제도

- 러시아 국회는 1992년 12월 6일 "러시아 연방 내 수출입 품목에 대한 면허와 쿼터제에 대한 법" 의 기초하에 1996년 12월 30일 승인된 에틸 알콜 및 보드카에 대한 수입면허 제도를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는 수입면허를 취득한 물품에 한해서 수입된 에틸 아코올 및 보드카에 특별한 소비세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2006년 새로운 소비세 마크의 발급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세 마크를 부착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해서 수입 및 수출,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잠시 러시아 주류 시장이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에는 새 법안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러시아 주류 시장 또한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80> 수입 면허 제도 적용 품목

품목	H.S.Code	관련 기관
에틸 알코올	2207 10 000, 2207 20 000, 2208 90 910, 2208 90 990	러시아 연방 경제통상부
보드카	2208 60	러시아 연방 경제통상부
독주 (알코올 함유율 28%이상)	2208 90 110, 2208 90 190, 2208 90 330, 2208 90 380, 2208 90 410, 2208 90 450, 2208 90 480, 2208 90 520, 2208 90 570, 2208 90 690, 2208 90 710, 2208 90 740, 2208 90 780	러시아 연방 경제통상부

- ☐ 1998년 2월 2일 승인된 주류 중 알코올 함유율 28%이상인 독주에 대해서도 수입 면허제를 1998년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위에 명시된 주류와는 분리된 법령하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3. 세이프가드제도(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포함)

- ☐ 쿼터 및 수입면허제도 외에 러시아는 자국 생산자 및 시장보호를 위해 1998년 4월 14일“ 대외교역에 있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동 법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으로 “특별보호제도”, “반덤핑 제도”, “보상제도(상계관세제도)”등을 도입하였다.
- ☐ 특별보호제도는 특정 상품이 러시아로 너무 많이 수입됨으로서 러시아 산업이 위험에 처할 경우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수입쿼터제도 및 특별관세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사전에 수입증가율, 동일제품의 러시아 판매 변화율, 러시아 생산 동향 및 시장 점유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게 된다. 특별보호조치는 최대 8년간 발동할 수 있으며, 특별 수입관세는 최대 20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보호조치는 사전조사 수행 후 실시되게 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사전 조사 없이 당해년도에 한해 정상관세의 1/3이내에서 관세를 올린 특별 수입관세 도입을 할 수 있다.
- 러시아 연방 관세법에 명시된 특별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된 상품의 수량 또는 상품의 여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생산자, 유사 상품 또는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보호장치로서 특별세 부과
 - 러시아 이익에 반하는 여타 국가 또는 동맹체의 차별 또는 규제 등 제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특별세 부과
- 반덤핑 조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5년동안 시행하게되며,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전조사가 끝나기 전에 4~6개월 동안 특별 반덤핑 관세를 정부가 부과할 수 있다.
- 반덤핑세의 적용은 수출국에서 수출당시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관세구역에 반입된 상품이 러시아의 유사상품 생산자에게 물적 손실을 끼치는 원인 및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 보상조치는 외국 정부가 특정 산업 또는 제품 생산에 수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사전조사 후 시행된다. 보복보상관세의 경우 제품 개당 보조금 지급 비율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조치는 최종조사 후 최장 5년까지 시행될 수 있다. 긴급상황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 4~6개월 동안 잠정보상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계관세의 적용은 직간접인 보조금을 이용한 생산품 또는 수출품이 러시아연방 관세구역내 반입되어 러시아의 유사상품 생산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및 위협을 제공하여 유사상품 판매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과된다.
- 비정규세(특별세,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발의에 따라 러시아 법령에 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따른 결정은 구체적인 수량통계에 근거한다. 적용세율은 조사결과에 따라 과소 평가된 덤핑, 보조 및 손실액수에 상응하여 러시아연방 정부가 부과한다.

4. 수입 금지 품목 및 국가

- 수입금지 조치는 주로 타국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취해진다. 보통 이러한 경우 러시아 농업부 검역국에서 발생국에서 질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후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발병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2006. 1. 20 전염병 발병으로 우크라이나산 축산물 수입 금지
 - 2006. 2. 10 구제역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코르엔테스주 축산물 수입 금지
 - 2006. 2. 14 조류독감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산 가금류 수입금지
 - 2006. 6. 23 조류 독감 발병으로 헝가리산 조류 수입금지
 - 2006. 7. 1 브라질산 육류 수입금지
 - 2006. 7. 17 브라질 산 가금류, 열처리 되지 않은 가금류 수입 금지
 - 2006. 7. 26 상당량의 카드뮴류 금속 발견으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
 - 2006. 9. 8 미국 메릴랜드, 펜실베이아 주 가금류 수입금지

5. 품질 인증 제도

- WTO 가입을 염두에 둔 러시아 정부는 수입상품의 통관 및 관세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갈수록 인증절차와 같은 비무역 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로 수출되는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GOST-R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이중 일부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도 신청품목에 대한 Testing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러시아의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GOSSTANDART)는 특히 한국과 동남아 및 중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전기제품, 공산품 및 식품 기타 제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93년 7월 소비자 보호법의 발효이후, 아동용품, 식품, 식물, 전기, 전자제품, 일용 화학품, 수송설비, 가구 등 150여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필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 통관 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비용 등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SGS 한국지사, 러시아연방 사할린의 인증기관인 이쎬르센 등 2개가 지정되어 있다. 인증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마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평균 500달러(루블화 기준) 내외이며, 인증서 발급비용은 250달러(루블화 기준)로 책정되어 있다.
- 99년 4월 1일부터 러시아는 주류,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등 3대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여 상품생산기업과무역업체가

부착의무를 지며 마크 미부착 상품은 99년 6월 1일 이후 판매금지 및 몰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모스크바 시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부착토록 하였다.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류, 산업생산물에 대해 특별 바코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당초 98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약 1년 정도 연기한 것이다.

- 러시아 정부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수입 식료품에 러시아어 표기 상품라벨 부착 의무화하고 있다. 부착내용으로는 상품명, 생산업자명, 원산지표시, 중량 혹은 부피, 칼로리, 주요 함유물, 저장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조리방법 등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저질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외국수입 상품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보따리 무역상에 의한 밀수 방지책으로 상품라벨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인증조치는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량 내구소비재의 수입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기 대상분야로 내구소비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인증후 정기적 사후관리를 하는 국제적 인증제도와는 달리 러시아는 매년 인증제도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서 발행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대러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상 등을 통해 한국내 인증대행기관(현재 2개)의 확대, 러시아의 인증제도의 간소화 및 인증서 발행기관의 확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의 우리의 해당규격과 러시아 규격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후, 적용 가능분야부터 상호인정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

<표 81> 러시아 GOST 취득 대상 식품류 리스트

Item	H.S. Code
Fish, seafood etc	0304, 0305 (except clipfish, salty), 0306 (except non-fish items, alive, cooled, frozen); 0307 (except non-fish items, alive, cooled, frozen)
Dairy products (except raw milk and cream, dry dairy products); natural honey	0401 (except raw milk and cream), 0402 91, 0409 99, 0403 10 (except dry yogurt), 0403 90 5100-0403 90 6900, 0403 90 9100-0403 90 9900, 0404 10 4800-0404 10 84 00, 0404 90 (except dry dairy products), 0405, 0406, 0409 00 0000, 2106 90 1000
Vegetables	07(except 0701 10 0000, 0701 90 1000, 0703 10 1100, from 0703 10 9000- for sawing, 0703 20 0000- for sawing, 0703 90 0000- for sawing, 0711, 0713 10 1000, from 0713 20 0000- for sawing, from 0713 31 0000- for sawing, from 0713 32 0000- for sawing, 0713 33 1000, from 0713 39 0000- for sawing, from 0713 40 0000- for sawing, 0713 50 0000, 0713 90 1000)
Bull sperm, fresh, frozen	0511 10 0000
Sperm of horses, sheeps, cocks etc, fresh frozen	From 0511 99 803
Embryos	0511 99 802
Coffee (except coffee wastes and coffee grain coating), tea, mate	0901 (except 0901 90 1000), 0902, 0903 00 0000
Animal and vegetable fats, butter and oils, their processed products; ready-made food fats (except those, used technical or industrial making of non-foodstuff products)	1507 10 900, 1507 90 900, 1508 10 9000, 1508 90 9000, 1509, 1510 00 (except those, used technical or industrial making of non-foodstuff products), 1511 10 9000, 1511 90 1100, 1511 90 1900 (except those, used technical or industrial making of non-foodstuff products), 1511 90 9900, 1512 11 910, 1512 11 990, 1512 19 910, 1512 19 990, 1512 21 9000, 1512 29 9000, 1513 11 9100, 1513 11 9900, 1513 19 1100, 1513 19 1900(except those, used technical or industrial making of non-foodstuff products), 1513 19 9100, 1513 19 9900, 1513 21 3000, 1513 21 9000, 1513 21 1100, 1513 21 1900 (except those, used technical or industrial making of non-foodstuff products), 1513 29 5000, 1513 29 9100, 1513 29 9900, 1514 11 900, 1514 19 900, 1514 91 900,

Item	H.S. Code
	1514 99 900, 1515 19 9000, 1515 21 9000, 1515 29 9000, 1515 50 1900, 1515 50 9900, 1515 90 5100, 1515 90 5900, 1515 90 9100, 1515 90 9900, 1516 20 9100, 1516 20 9600 (except, fats for cookery, confectionery and bread making), 1516 20 9800 (fats for cookery, confectionery and bread making), 1517 (except fats for cookery, confectionery and bread making), from 2106 90 9809
Prepared meat, fish, mollusk and other similar products (except extracts and juices, made from meat, fish, mollusk and other similar products)	16(except 1603 00, from 1604 20 9090-protein paste)
Foodstuff products, made by processing vegetables, fruits, nuts and other plant parts for retail	From 20
Various foodstuff products (except those coffee- and tea-based; extracts and concentrate, made from roasted coffee substitutes, food additives and biologically active food additives-nutriceutics)	2101 11, 2101 12 9200, 2101 20 2000, 2101 20 9200, 2103(except concentrates of spices and taste additives), 2104 (except bouillon cubes), from 2105 00- ice-cream, containing or not containing cocoa)
Inactive yeasts	From 2102 20
Alcohol and alcohol-free beverages	2201 10 (except mineral table-water, industrially bottled), 2202 10 0000 (except mineral table-water, industrially bottled), 2202 90, 2203 00 (except 2203 00 1000), 2204, 2205, 2206 (except 2206 00 8100, 2206 00 8900), from 2207 10 0000- ethyl alcohol, 2208 20 (except 2208 20 4000, 2208 20 6200, 2208 20 6400, 2208 20 8600, 2208 20 8700, 2208 20 8900), 2208 30 (except 2208 30 1900, 2208 30 3800, 2208 30 5800, 2208 30 7800, 2208 30 8800), 2208 40 (except 2208 40 5100, 2208 40 9100, 2208 40 9900), 2208 50 (except 2208 50 1900, 2208 50 9900), 2208 60 (except 2208 60 1900, 2208 60 9900), 2208 70(except 2208 70 9000), 2208 90(except 2208 90 1900, 2208 90 3800, 2208 90 7100, 2208 90 7400, 2208 90 7800, 2208 90 9100, 2208 90 9900)
Cigarettes	2402 20

□ GOST 인증서 발급절차(식품류 : 건강 보조식품, 육류제품 및 육류 첨가제품 제외)

- (주)CTR을 통하여 샘플테스트와 함께 러시아 위생증명서 획득 후
GOST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 1. Certificate of Quality

2. Sample for GOST test, 각 제품별, 용량별 4개 이상

3. Russian label

4. GOST 인증 신청서(Application for GOST-R Certificate)

- 첨부서류 : 1. Packing List

2. Commercial Invoice

3. 제조일/유통기간

4. 과일 및 식물은 식물 검역증(Phytosanitary첨부

□ 발급 소요시간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1 ~ 2주 이내에 GOST 인증서 발급

- 건강 보조식품, 육류 및 그 가공제품은 러시아에서만 TEST를 받아야
하며기간은 제품에 따라 1.5 ~ 4개월 소요

□ 발급비용(2006 모스크바 박람회 기준, 품목별) : 약 790,000원

- 러시아 위생증명서 비용(1년 인증유효) : 420,000원

- GOST Test(6개월동안 안정성 인증) : 250,000원, 시험방법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

- GOST R 인증서(매 선적시) : 120,000원

*위 비용은 인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인증기간은 1 ~ 3년이 있음

*GOST 인증서는 품목별로 받아야 하며, 같은 종류의 추가 맛인 식품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및 인증서에 추가 비용만 내고 발급 가능

□ 인증 관련 기관

① 러연방 표준화위원회

(GOSTR : 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주소 : 9, Leninsky prospect, Moscow, 117049, Russia

② 국제협력국

Tel : 7-095-236-4044

Fax : 7-095-237-6032

E-mail : szak@gost.ru

③ 인증국 국장

Tel : 7-095-236-7263

Fax : 7-095-236-6231

④ GOST-R 부설 연수원

(Academy of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주소: 90-1, Volgogradsky ave., Moscow, 109443

Tel : 7-095-172-4730

Fax : 7-095-372-7156

⑤ GOST-R 산하 “ 전러시아 인증과학연구원 ”(VNIS)

(All-Russia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for Certification)

주소 : 3/10, Elektrichesky per., Moscow, 123557

Tel : 7-095-253-0324

Fax : 7-095-253-7713

E-mail : vniis@vniis.ru

- ⑥ GOSTR 산하“ 기계공학 표준화 인증 과학연구원”(VNINMASH)
 (Russian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in Mechanical Engineering)
 주소: 4, Shsnogin str., Moscow, 123007, Russia
 Tel : 7-095-256-0449
 Fax : 7-095-256-6500
- ⑦ GOST-R 산하“ 러시아 시험인증센터 ”
 (Russian Center for Test and Certification : Rostest-Moscow)
 Tel : 7-095-332-6777
 Fax : 7-095-129-2611
 E-mai : mig@rostest.msk.su
 주소: 31, Nakhmovsky prospect, Moscow, 117418
- ⑧ GOST-ASIA PTE LTD
 (Singapore-Russian Joint Company, Representative of
 GOST-R)(GOSTR의 아시아지사 역할) 본사 싱가포르 소재
 주소 : No. 3, 3 Science Park Drive, #04-17, Singapore 118223
 Tel : 65-777-2889 / 0446
 Fax : 65-777-4762
 E-mail : gostasia@pacific.net.sg
- ⑨ 러시아 인증전문 민간회사 《Poly-Cert》 (GOST-R 지정 인증기관)
 주소 : 47(3 Floor), Shepkina st., Moscow, 110129, Russia
 Tel : 7-095-95607693
 Tel/Fax : 7-095-281-9190

6. 기타 비관세 규제

□ 외환 의무 매각제

- 수입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타 비관세 규제로 외환관리의 강화고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금융.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 의무 매각제란 러시아의 수출업체들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외환시장에서 매각해야 하는 조치이다. 러시아는 작년 1998년 10월 이 비율을 50%로 설정한 이후 1999년 초에 이를다시 75%로 상향조정 하였다.
- 러시아는 1995년 말 WTO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상거래에 대한 루블화의 태환성을 환전 보장하여 IMF 8조국 가입을 공식 선언하였는바. 이에 따라 외환소득의 50% 매각의무 등 외환규제가 상당부분 해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확보, 경화의 불법 해외유출방지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외환의무 매각제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 이에 따르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으로 받는 경화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모스크바외환거래소(MICEX)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불이행 시 중앙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환율에 따라 강제로 환전하여 외환을 회수할 수 있다.
- 한편, 러시아는 1998년 말 외환규제 차원에서 기존에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거래 패스포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이 수출대금의 대러시아 반입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도 해당거래은행이 수입대금 결제 후 상품의 대러시아 반입을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였다.

□ 수입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1037호에 의거, 1998년 7월 1일부터 모든 소

비재 수입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명, 원산지 및 제조업체, 제품 용도, 주요특징 및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상품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 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주소 등 8가지
- 이와 같은 표기는 포장지, 라벨로 하거나 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품과 함께 동봉

7. 한국식품 수입규제 및 위반사례

최근 한국식품 수입규제 및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VI. 기타사항

1. 농수산물(식품)관련 주요 정부 기관 내역

명칭 : 경제발전 무역부

주소 : Russia, 125818, Moscow, Tverskaya-Yamskaya str., 1/3

전화 : (7-095) 950-1059, 950-1262

팩스 : (7-095) 950-9424

홈페이지 : www.economygov.ru

E-mail

담당자 : German Oskarovich Gref

명칭 : 농업부

주소 : Russia, 107139, Moscow, Orlikov Pereulok, 1/11

전화 : (7-095) 207-8366

팩스 : (7-095) 288-9580

홈페이지 : www.mcx.ru

E-mail : defore@agro.aris.ru

담당자 : Alexey Vasilyevich Gordeev

명칭 : 보건부

주소 : Russia, 101431, Moscow, Neglinnaya str., 25

전화 : (7-095) 923-8406

팩스 : (7-095) 504-4446

홈페이지 : www.minzdrav-rf.ru

E-mail : shevchenko@minzdrav-rf.ru

담당자 : Yuri Leonidovich Shevchenko

명칭 : 계측위원회

주소 : Russia, 119991, Moscow, Leninsky Prospect ave., 9

전화 : (7-095) 236-0300

팩스 : (7-095) 236-6231

홈페이지 : www.gost.ru

E-mail : info@gost.ru, Vusov@gost.ru

담당자 : Vitaly Victorovich Usov

명칭 : 러시아 곡물 제품 검사원

주소 : Russia, 107078, Moscow, Orlikov Pereulok str., 10/1

전화 : (7-095) 975-3052, 975-1662

팩스 : (7-095) 975-2539

홈페이지 : www.rghi.ru

E-mail : rghi@orc.ru

담당자 : Oksana Alexandrovna Labutina

명칭 : 식물검역 위원회

주소 : Russia, 107139, Moscow, Orlikov Pereulok str., 3

전화 : (7-095) 207-8041

팩스 : (7-095) 975-3971

홈페이지 : N/A

E-mail: goskarantin@mail.ru

담당자 : Alexander Sergeevich Vasyutin

명칭 : 경제발전무역부 관세조정 및 국내시장 보호국

주소 : Russia, 113324, Ovchinnikovskaya Naberejnaya str., 18/1

전화 : (7-095) 950-9649

팩스 : (7-095) 950-1995

홈페이지 : www.economygov.ru

E-mail: N/A

담당자 : Andrey Konstantinivich Kushnirenko

명칭 : 농업부 수의국

주소 : Russia, 107139, Moscow, Orlikov Pereulok, 1/11

전화 : (7-095) 975-5850, 975-1658, 208-2255

팩스 : (7-095) 975-5850, 975-1658, 208-2255

홈페이지 : www.mcx.ru

E-mail: N/A

담당자 : Eugeny Anatolievich Nepoklonov

명칭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

주소 : Russia, Moscow, Vadkovsky Peeulok str., 18/20

전화 : (7-095) 973-2666

팩스 : (7-095) 973-1319

홈페이지 : www.gsen.ru

E-mail: N/A

담당자 : Sergey Ivanovich Ivanov

명칭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 센터

Address: Russia, Moscow, Varshavskoye Shosse str., 19A

전화 : (7-095) 954-7356

팩스 : (7-095) 954-0310

홈페이지 : www.fcgsen.ru

E-mail : gsen@fcgsen.ru

담당자 : Eugeny Nicholayevich Belyaev

2. 대러 수출시 유의사항

가.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 ☐ 러시아의 통관관련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일선 기관에서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된다.
- ☐ 관련규정이 수시로 변동하고 시행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과리들의 자의적인 집행사례가 빈번하다.
- ☐ 또한 러시아 세관 당국이 특정업체를 지적하여 통관케 하거나 사소한 서류마비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 ☐ 높은 관세율뿐 아니라 규정의 일률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 ☐ 2001년 1월부터 통관제도를 엄격히 시행함에 따라 통관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 바이어 상관습

- ☐ 국제 상관습에 미숙
 - 러시아 바이어들은 대외무역경험이 일천하여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관행에 어긋나는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침착하게 인내를 갖고 상담에 응해야 하며, 특히 거래가 상호간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 단기 딜리버리 선호

- 시장상황 급변 및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능할 경우 2주이내의 단기 딜리버리를 선호

☐ 소량주문 경향

- 영세한 소규모 수입상이 많으며, 이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고 시장성 검토를 위한 소량주문 선호

☐ 외상거래 선호

- 러시아에는 외상거래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외상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 신용장사용기피

- 세무 추적 회피 및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장 사용을 기피, 일반적으로 T/T송금방식(D/P, D/A, COD)결제 선호

☐ 제조업체와 직거래 선호

- 러시아 업체들은 중개무역상을 통할 경우 상품가격이 대폭올라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선호

3. 조사 참고자료 및 협조기관

• 참고자료

- 러시아 관세 위원회 발행, 연간 러시아 관세 통계 2003, 2004, 2005
- 러시아 식물-전염병 규제 법, 2005년 발행
- 식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한법, 보건부
- 대외무역에 관한 법, 러시아 연방
- 러시아 연방 관세법, 러시아 관세위원회

- 수입규제에 관한 법, 러시아 의회
- 비관세 장벽에 관한 법, 러시아 경제 무역발전국
- 2003년 KOTRA 관련 조사 자료
- 모스크바 KOTRA 지사 경제활동 조사담당자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2-127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 본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 제도, 통계자료 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 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